

2020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의견서

수 신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이 정함에 따라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의견서』를 별책과 같이 제출 합니다.

○ 검사기간 : 2021년 4월 8일 ~ 4월 27일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고 경 애 (서구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김 인 철 (지방의회연구소장)
- 검 사 위 원 : 윤 영 춘 (공인 회계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이 정함에 따라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의견서』를 별책과 같이
제출 합니다.

별책: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1. . .

결산검사대표위원 **고 경 애**

2020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의견서

202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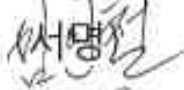

결산검사대표위원 **고경애**

결산검사의견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 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 14조 등이 정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증빙서류 및 관계직원의 직접 설명 등을 토대로 2020년 4월 8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직원과의 직접 대면과 현장방문 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제도 개선 등 의견은 별책 내용과 같습니다.

2021년 월 일

결산검사 대표위원 고 경 애 (서명) 
 위 원 김 인 철 (서명) 
 위 원 윤 영 춘 (서명) 

□ 단계별 조치

기 한	단 계	조치 사항
12. 31.	·회계연도 종료 (출납행위 마감)	·지출원인행위 마감 ·해당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 반납, 지급 완료 ·세입세출 과목의 정정 ·세계 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해당 회계연도 세입금의 수납
1. 10.	·이월 결정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1. 20.	·출납원 징수금 및 일상경비	·세입금의 금고 납입 마감
2. 10.	·출납사무 마감 (지방회계법 제7조 제3항) *집행부, 결산서 작성 (2.11.~3.20.)	모든 장부 마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사업부서 등 결산설명자료 제출 ① 결산검사위원, 금고 방문 *감사관 참석 세입부 세출부 마감 확인 ② 의회는 2.10. 이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산검사 자료요구 등 준비 기간 부여 ③ 다른 지자체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연고 등에 따른 폐해 최소화
3. 20.	·결산검사의뢰 *지자체장, 출납폐쇄 후 80 일 이내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자체 장, 결산검사대표 위원에게 공문으로 “결산검사의뢰”, 결산서 및 증빙서류 첨부
3. 20.~ 5. 20.	·결산검사 (20일~30일) *공휴일제외 검토	·결산검사대표위원,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결산검사의견서’ 지자체장에게 제출
5. 31.	·결산서 의회 제출 *검사의견서에 대한 서면답변 첨부 권장	·의회 의결 *결산검사의견서 및 감사위원 공고 (의회홈페이지 30일 동안)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1차 정례회: 6월. 다만, 지방총선거 후: 9월

□ 감사위원별 감사분야 분장(안)

[감사위원별 감사분야 분담(안)]

분 야	담당 위원	비 고
I.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대표위원(의원)	총괄
1. 일반회계		
가. 예산총칙 *주요 기능별 결산 현황	전직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감사위원)	
나. 세입·세출		조세 및 세외수입 과정
(1) 세입	세무사(감사위원)	
(가) 세수추계의 적정성		
(나) 세입징수실적		
1) 지방세		
2) 세외수입		
(2) 세출 :		
주요사업(투자심사, 지방채), 민간보조· 위탁·투자사업, 출자·출연사업, 행사 성 사업, 위원회 운영, 복지시설등 사업, 공연장 등 시설건립, 공유재산 관리, 지 출원인행위(계약), 사고이월 등.	전직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감사위원)	
다. 계속비		
라. 명사이월비		
마. 채무부담행위		
바. 예비비		
사. 성과보고서		
아. 성인지 결산		
자.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차. 결산 첨부자료 등에 대한 검사		
(1) 채권 및 채무	공인회계사(감사위원)	
(2) 공유재산		
(3) 물품		
카. 금고		
2. 특별회계	※ 일반회계분야 분담과 같이	
3. 재무회계	공인회계사(감사위원)	전담
4. 지방의회	전직공무원 등 외부전문가(감사위원)	
II. 기금운용계획	세무사·공인회계사 외부전문가(감사위원)	

목 차

I. 결산개요	1
1. 일반현황	1
2. 회계현황	2
3. 세입세출결산	4
4. 기금결산	7
5. 재무제표	8
II.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11
1. 일반회계	11
가. 예산총칙	11
나. 주요 기능(분야)별 결산현황	13
다. 세입·세출	15
(1) 세입	15
(가) 세수추계의 적정성	15
(나) 세입징수실적	17
1) 지방세	17
2) 세외수입	19

(다) 탄력세율 운용실적	20
(라) 지방세지출(비과세감면) 실적	21
(2) 세출	23
(가) 장기계속사업 운용현황	23
(나) 자체사업	24
1) 자체사업 불용액 과다 사업현황	24
2) 2020회계연도 재량지출 비중	28
(다) 지방보조금 사업	30
(라)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37
(마) 국외출장	39
(바) 민간위탁사업 운영	41
(사) 예산의 이용·이체, 전용	48
(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49
라. 계속비	50
마. 명시이월비	53
바. 사고이월비	63
사. 채무부담행위	71
아. 예비비	71

자. 성과보고서	74
차. 성인지결산	76
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77
타. 결산 첨부자료 등에 대한 검사	93
(1) 채권 및 채무	93
(2) 공유재산	96
(3) 물품	98
파. 금고	99
2. 특별회계	99
3. 재무회계	101
4. 지방의회	103
Ⅲ. 기금운용계획	107
Ⅳ. 결산검사의견 목록	109

I. 결산개요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면적	시군구	읍면동			전년도 인구수		현년도 인구수	
			읍면동	리·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47.75km ²	서구	18	418	2,226	131,373	298,223	131,813	294,691

(2021.3.31.기준)

나. 행정조직

(단위 : 개소)

구분	본청			의회	보건소	동	공무원수
	국	실·담당관과	팀				
행정조직	6	32	116	1 (3팀)	1 (4과 2센터 20팀)	18 (40팀)	1,017

참고자료

조직개편 현황자료 (2020.12.29. 공포)

■ 개정 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기능·인력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 신종 감염병 대응 등 행정환경 변화 및 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부서 신설 기능 강화

■ 주요 내용

□ 국 단위 변동에 관한 사항

- 과 신설 및 기능명칭 변경 등에 따른 국 소관 부서 편제, 건제순, 소관사무를 규정(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 문화경제국 : 문화예술과, 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복지급여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 안전도시국 :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 자치행정국 :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 보건소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 한시기구(통합돌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 과 단위 변동에 관한 사항

- 과 신설(제7조, 제10조, 제15조) : 체육관광과, 주택과, 감염병관리과
- 과 폐지(제10조) : 도시계획과
- 과 기능·명칭 변경(제7조, 제9조, 제10조)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 여성아동복지과 →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건축주택과 → 건축과
- 과 소속 변경(제10조)
 - 토지정보과 : 자치행정국 → 안전도시국

다. 공무원 현원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지방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현원 (21. 4. 13 .기준)	1,003	1,000		1	2

2. 회계현황

가. 현황

광주광역시 서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2개, 기금 6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광주 서구의 회계현황

회 계	종 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일반회계	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
기 타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주차장법 ○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 운영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의료급여법 ○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기 금	사회복지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 계	종 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재난관리기금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 충당 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 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 과 재산보호
	통합관리기금	○ 지방자치법 제 142조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 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및 효율적 활용
	옥외광고발전기금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 ○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 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을 조성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기본법 ○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 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에 기 여

나. 2020회계연도 중 회계의 변동

2020회계연도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였음.

3.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요약

- 광주광역시 서구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은 827,670백만 원, 총세출은 686,842백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40,828백만 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827,670	686,842	140,828	70,247	9,438	61,143
일반회계	790,341	679,863	110,477	57,332	9,225	43,921
특별회계	37,329	6,979	30,351	12,915	213	17,222

* 회계별 총계금액임

-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1.5% 낮고, 잉여금의 경우 5년 평균증가율이 17.2% 로 증가 추세임.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3년 평균증가율	
세입(A)	543,333	637,030	827,670	23.6	
세출(B)	440,800	517,559	686,842	25.1	
잉여금 (A-B)	소계	102,533	119,471	140,828	17.2
	이월금	42,116	62,906	70,247	30.5
	보조금 실제반납금	6,458	8,793	9,438	21.7
	순세계 잉여금	53,959	47,772	61,143	8.3

나.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세입결산(재원별 현황)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19	전년대비 (%)	2020	전년대비 (%)
계	543,332	637,030	117.2	827,670	129.9
일반회계	512,690	600,555	117.1	790,341	131.6
자체수입	92,916	100,662	108.3	113,269	112.5
지방세수입	62,423	67,707	108.5	77,363	114.3
세외수입	30,493	32,955	108.1	35,906	109
이전수입	350,153	417,534	119.2	586,614	140.5
지방교부세	14,377	22,504	156.5	18,490	82.2
조정교부금 등	57,375	64,042	111.6	69,127	107.9
보조금	278,401	330,988	118.9	498,997	150.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621	82,359	118.3	90,458	109.8
특별회계	30,642	36,475	119	37,329	102.3

(2) 세출결산(기능별 현황)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19	전년대비 (%)	2020	전년대비 (%)
계	440,800	517,559	117.41	686,842	132.71
일반회계	430,332	510,229	118.57	679,863	133.25
일반공공행정	25,312	29,926	118.23	111,495	372.57
공공질서및안전	1,373	1,818	132.41	3,733	205.34
교육	3,450	3,454	100.12	3,734	108.11
문화및관광	7,273	8,436	115.99	7,812	92.60
환경	18,273	22,811	124.83	25,172	110.35
사회복지	253,369	309,941	122.33	383,763	123.82
보건	12,177	15,516	127.42	16,241	104.67
농림해양수산	5,234	4,012	76.65	4,020	100.20
산업·중소기업	4,922	7,569	153.78	9,478	125.22
수송및교통	6,501	8,448	129.95	9,718	115.03
국토및지역개발	18,572	22,631	121.86	22,355	98.78
기타	73,876	75,667	102.42	82,341	108.82
특별회계	10,468	7,330	70.02	6,979	95.21

4. 기금결산

○ 광주광역시 서구의 2020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1,499백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362백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1,816백만 원을 공제한 11,045백만 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11,499	△454	1,363	1,816	11,045
통합관리기금	1,220	0	8	8	1,220
사회복지기금	3,216	66	336	270	3,282
양성평등기금	205	4	4	0	209
재난관리기금	5,670	△634	694	1,328	5,036
옥외광고발전기금	841	113	167	54	954
식품진흥기금	347	△3	153	156	344

최근 3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3년 평균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0,026	10,711	11,499	7.1
당해연도 조성액	1,133	1,492	1,363	15.8
당해연도 사용액	449	705	1,816	107.3
당해연도말 조성액	10,711	11,499	11,045	1.7

○ 당해 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3년간 평균 약 1.7% 증가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산정방식 : $[(\text{최종연도}/\text{기준연도})^{1/(\text{전체연도 수}-1)}-1] \times 100$ (소수점 1자리)

5. 재무제표

가. 재무제표 요약

- 2020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35,765백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57%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015백만 원(14.41%)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0년	1,058,647	23,271	1,035,376	668,057	697,834	(29,777)	
2019년	1,019,655	20,044	999,611	488,563	523,354	(34,792)	
증감	38,992	3,227	35,765	179,494	174,480	△5,015	

나. 재무제표 분석

- (1) 재정상태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035,376백만 원, 전년대비 35,765백만 원(3.57%) 증가

- 총자산은 1,058,64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992백만 원(3.82%) 증가함.

- 증가내역 : 일반유형자산 및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이 작년 대비 각각 8.48%, 4.52%, 0.67% 증가

최근 3년간 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988,509	100	1,019,655	100	1,058,647	100
유동자산 ¹⁾	132,731	13.43	151,974	14.90	172,731	16.32
투자자산 ²⁾	4,182	0.42	3,976	0.39	3,711	0.35
일반유형자산 ³⁾	91,222	9.23	100,182	9.83	108,679	10.27
주민편의시설 ⁴⁾	107,882	10.91	107,376	10.53	112,240	10.60
사회기반시설 ⁵⁾	650,865	65.84	654,621	64.20	659,009	62.25
기타비유동자산 ⁶⁾	1,628	0.16	1,526	0.15	2,278	0.22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의수입금 등
-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 3)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총부채는 23,27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27백만 원(16.09%) 증가함.
- 증가내역 : 유동부채 2,615백만 원 증가, 비유동성 부채 612백만 원 증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24,519	100	20,044	100	23,271	100
유동부채 ⁷⁾	10,571	43.11	9,165	45.73	11,780	50.62
장기차입부채 ⁸⁾	3,631	14.81	-	-	-	-
기타비유동부채 ⁹⁾	10,317	42.08	10,879	54.27	11,491	49.38

(2)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29,777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15백만 원(14.41%) 감소

- 총비용은 668,057백만 원, 전년 대비 179,494백만 원(36.73%) 증가함.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23,071	100	488,563	100	668,057	100
인건비 ¹⁾	82,408	19.48	84,978	17.39	98,428	14.73
운영비 ²⁾	88,571	20.94	112,984	23.13	119,724	17.92
정부간이전비용 ³⁾	4,950	1.17	4,203	0.86	4,721	0.71
민간등이전비용 ⁴⁾	233,074	55.09	274,889	56.26	431,766	64.63
기타비용 ⁵⁾	14,068	3.33	11,509	2.36	13,418	2.01

7)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8)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9)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 총수익은 697,834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480백만 원(33.33%) 증가함.

최근 3년간 인건비 예산 및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			2019			2020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보수 101-01	44,094	40,362	3,732	46,119	43,025	3,094	50,500	47,605	2,895
기타직 보수 101-02	2,411	2,199	212	2,585	2,420	165	2,958	2,806	152
무기계약직 보수 101-03	10,101	9,521	580	10,049	8,991	1,057	10,878	10,636	242
합계	56,606	52,082	4,524	58,752	54,436	4,316	64,336	61,048	3,289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52,586	100	523,354	100	697,834	100
자체조달수익 ⁶⁾	105,803	23.38	108,089	20.65	119,084	17.06
정부간이전수익 ⁷⁾	345,225	76.28	415,196	79.33	578,401	82.89
기타수익 ⁸⁾	1,557	0.34	70	0.01	350	0.05

6)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7)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8)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II.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일반회계

가. 예산총칙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경			최종	일시차입 한 도 액	일시차입 한도액 결산
		1회	2회	3회			
합 계	502,171	611,351	727,196	741,813	741,813	22,254	
일반회계	473,914	587,177	705,051	719,503	719,503	21,585	-
특별회계	28,257	24,174	22,145	22,310	22,310	669	-
기타특별회계	28,257	24,174	22,145	22,310	22,310	669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1,163	1,711	1,711	1,734	1,734	617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7,094	22,463	20,434	20,576	20,576	52	-

제 1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제 2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채무부담행위사업” 은 없다.

제 4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조 2020년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4,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조 제방재정법 제 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이용에 관한 규정

지방예산총칙 제6조	국가예산총칙 제10조
<p>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도 상호 이용할 수 있다.</p>	<p>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9(생략)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점사의견 1> 예산총칙 이용대상 경비(목) 구체적으로 명시

광주광역시 서구는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 시 부족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한 일시차입 한도액 222억 원을 전액 차입 없이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함.

다만, 현행 총칙편의 이용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2 예산의 편제 4. 예산서 서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이용대상 경비의 목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예시한 국가 예산총칙의 이용규정 제10조를 참고하여 당해 예산편성기준을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을 요함.

나. 주요 기능(분야)별 결산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분 야	2018			2019			2020		
	예산액	지출액	구성비	예산액	지출액	구성비	예산액	지출액	구성비
합 계	461,460	430,332	100	539,902	510,229	100	719,503	679,863	100
일반공공행정	25,909	25,312	6	35,109	29,926	6	113,608	111,495	16
공공질서및안전	1,806	1,373	0	2,336	1,818	0	4,163	3,733	1
교육	3,760	3,450	1	5,265	3,454	1	3,580	3,734	1
문화및관광	7,129	7,273	2	10,567	8,436	2	9,864	7,812	1
환경	19,911	18,273	4	23,962	22,811	4	27,822	25,172	4
사회복지	264,481	253,369	59	319,976	309,941	61	399,270	383,763	57
보건	13,442	12,177	3	16,547	15,516	3	17,733	16,241	2
농림해양수산	5,420	5,234	1	4,385	4,012	1	4,996	4,020	1
산업·중소기업	5,727	4,922	1	6,158	7,569	1	10,580	9,478	1
수송및교통	8,094	6501	2	10,757	8,448	2	9,297	9,719	1
국토및지역개발	23,430	18,572	4	23,769	22,631	4	28,699	22,355	3
예비비	2,000	-	-	10	-	-	2,657	-	-
기타	80,351	73,876	17	81,061	75,667	15	87,234	82,341	12

※ 2020회계연도의 일반공공행정 부분의 예산 예산액(추경)이 113,60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그 구성비가 6%에서 16%로 급증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약 83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임.

사회복지분야 예산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전체예산액(A)		461,460		539,902		719,503	
사회복지분야 예산액(B)		264,481		319,976		399,270	
사회복지분야 재원별 예산액	국	166,128	62.81%	200,011	62.51%	242,565	60.75%
	특교세	1,518	0.57%	1,480	0.46%	570	0.14%
	특교금	545	0.21%	1,133	0.35%	4,583	1.15%
	시	70,136	26.52%	83,619	26.14%	114,876	28.77%
	구	26,154	9.89%	33,733	10.54%	36,676	9.19%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B/A*100)		57.31		59.27		55.49	

〈검사의견 2〉 사회복지분야 예산 부담 증가

위 첫 번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사회복지, 기타, 일반공공행정 등 경직성 경비가 85% 상당을 점유하고 있어, 서구청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규모가 크지 않음. 특히, 경직성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 두 번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57.31%에서 2019년 59.27%, 2020년 55.49%로 최근 3년간 전체예산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서구청의 재정부담을 가중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서구청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예산이 국민의 기본적 수요(national minimum)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전달업무만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개선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다. 세입·세출

(1) 세입

(가) 세수추계의 적정성

[총괄]

연도별 세수추계 및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예산액 (A)	수납액 (B)	차액 (B-A)	비율 (B/A)
계	86,301	92,917	6,616	108	89,347	100,661	11,314	112.7	97,375	113,268	15,893	116.3

※ 일반회계 기준

<검사의견 3> 세입예산 편성 시 수납추이 고려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예산액 대비 수납 비율이 108%,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12.7%,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16.3%로 최근 2년 동안 10% 이상 세입이 과소하게 추계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연도의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비율(10% 이하)을 반영할 것.

[세부]

연도별 세수추계 및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예산액	수납액	차액	비율	예산액	수납액	차액	비율	예산액	수납액	차액	비율	
	(A)	(B)	(B-A)	(B/A)	(A)	(B)	(B-A)	(B/A)	(A)	(B)	(B-A)	(B/A)	
계	86,301	92,917	6,616	108	89,347	100,661	11,314	112.7	97,375	113,268	15,893	116.3	
지방세	60,120	62,423	2,303	103.8	61,865	67,706	5,841	109.4	69,858	77,363	7,505	110.7	
보통세	계	59,400	61,675	2,275	103.8	61,145	66,813	5,668	109.3	69,138	75,917	6,779	109.8
	주민세	7,300	8,098	798	110.9	7,445	8,684	1,239	116.6	8,141	8,661	520	106.4
	재산세	43,600	44,742	1,142	102.6	45,100	48,394	3,294	107.3	47,700	52,923	5,223	110.9
	등록면허세	8,500	8,835	335	103.9	8,600	9,735	1,135	113.2	9,500	10,536	1,036	110.9
	지방소비세									3,797	3,797	0	100.0
지난도 수입	720	748	28	103.9	720	893	173	124.0	720	1,446	726	200.8	
세외수입	26,181	30,494	4,313	116.5	27,482	32,955	5,473	119.9	27,517	35,905	8,388	130.5	
경상적수입	계	19,639	21,971	2,332	111.9	21,258	22,592	1,334	106.3	21,460	23,827	2,367	111
	재산임대수입	60	63	3	104.8	43	61	18	141.3	42	51	9	121.7
	사용료수입	1,653	1,813	160	109.6	2,094	1,844	-250	88.1	1,627	1,357	-270	83.4
	수수료수입	9,027	9,204	177	102	9,527	9,670	143	101.5	10,273	10,312	39	100.4
	사업수입	363	385	22	106	378	420	42	111.1	139	129	-10	93.1
	징수교부금수입	7,912	9,462	1,550	119.6	8,516	9,325	809	109.5	8,377	9,956	1,579	118.6
	이자수입	624	1,044	420	167.2	700	1,272	572	181.8	1,002	2,022	1,020	201.8
임시적수입	계	6,542	8,523	1,981	130.3	6,224	10,363	4,139	166.5	6,057	12,078	6,021	199.4
	재산매각수입	270	376	106	139.2	597	643	46	107.5	100	45	-55	45.2
	부담금	431	618	187	143.3	445	626	181	140.6	642	720	78	112.1
	과징금 및 과태료등	2,231	3,282	1,051	147.1	2,200	2,819	619	128.1	2,826	4,435	1,609	156.9
	기타수입	2,510	3,089	579	123	1,882	3,030	1,148	160.9	1,389	4,739	3,350	341.1
	과년도 수입	1,100	1,158	58	105.3	1,100	3,245	2,145	295	1,100	2,139	1,039	194.5

※ 일반회계 기준. 지방소비세는 2020년부터 구제 편입

(나) 세입징수실적

1) 지방세

□ 현 황

최근 3년 동안의 재산세 및 취득세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목		2018년 징수액	2019년 징수액	2020년 징수액
구세	재산세	44,742	48,394	52,923
	재산세 외	16,933	18,419	22,994
	소계	61,675	66,813	75,917
시세	취득세	101,545	97,499	118,213
	취득세 외	155,951	146,587	160,727
	소계	257,496	244,086	278,940
현년도 총액		319,171	310,899	354,857

최근 3년 동안의 체납액 관리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2018년	2019년	2020년
지방세	체납액	1,084	1,318	1,861
	결손액	292	314	332
	소계	1,376	1,632	2,193
부서별 담당인원		4	4	4
세외수입	체납액	10,238	9,651	8,086
	결손액	2,092	2,038	2,587
	소계	12,330	11,689	10,673
부서별 담당인원		3	3	3
지방세+세외수입		13,706	13,321	12,866

참고자료

■ 소멸시효완성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2.~6. 생략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1항 3호(결손처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시효완성의 내용

소멸시효완성이란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천만원이상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해주어야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를 가정할 때, 지방세 징수과정은 고지-독촉-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며 이 각 각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따라서 고지서상 납부기간이 지난 시점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판단하고, 이후 독촉이 이루어질 경우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독촉장상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60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완성 결손처분 대상 지방세가 됩니다.

만약 독촉 이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해제일부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압류해제일부부터 60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소멸시효완성 결손처분을 합니다.

2) 세외수입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주차요금, 통행료수입, 청산금수입, 분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음.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편성 (A)	수납 (B)	수납율 (B/A)	편성 (A)	수납 (B)	수납율 (B/A)	편성 (A)	수납 (B)	수납율 (B/A)
합 계	26,182	30,492	116.5	27,483	32,955	119.9	27,518	35,906	130.5
경상적세외수입	19,640	21,970	111.9	21,257	22,592	106.2	21,461	23,828	111.0
임시적세외수입	6,542	8,522	130.3	6,226	10,363	166.4	6,057	12,078	199.4

<검사의견 4> 세외수입 편성 시 수납추이 고려

연도별 세외수입 결산액 현황을 보면 2018년도 편성 대비 수납 비율이 116.5%,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19.9%,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30.5%로 매년 10% 이상 세외수입이 과소하게 추계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세외수입 편성 시 최근 연도의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비율(20% 이하)을 계상할 것.

(다) 탄력세율 운용실적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법정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 조정 적용할 수 있음.
- 취득세 (지방세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주민세
 - 지방세법 제78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제84조의3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 재산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

최근 3년간 탄력세율 운용실적

(단위 : 천원)

탄력세율 세목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주민세 (개인균등)	1,137,291	976,580	1,090,601	947,573	1,122,912	1,004,824	

※2020기준 주민세는 광역지세임

(라) 지방세지출(비과세감면) 실적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비과세감면비율”(=지방세 비과세·감면액/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 결산액+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다음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영 제35조의7).
1. 2017년까지: 100분의 15
 2. 2018년: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9년: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20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 감면건의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제2항)’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도별 지방세지출(비과세·감면)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16,402	17,093	18,218	19,232
비과세	13,817	14,225	15,105	15,767
감면	2,585	2,867	3,113	3,465
지방세 징수액 (B)	59,220	62,423	67,706	77,362
비과세·감면율 (A/A+B)	21.7	21.5	21.2	19.9

<검사의견 5> 지방세 감면 실적 양호

서구의 경우 제1항 제4호의 기준(2020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인 21.9%)과 비교하여 보면, 2020회계연도의 지방세·감면율은 19.9%로, 감면 목표인 21.9%보다 2%가 더 낮은 것으로 적정한 감면 실적을 보이고 있음.

참고자료

세입금 환급현황

- 사유별 상세한 설명자료 (행정기관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등)

구 분	분 류	사 유
과오납금	행정기관착오	기부과자 부과 등 이중부과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착오
		주소 또는 성명오기(오기로 인한 단순착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기타
환급세액	납세자 권리구제	이의신청 결정
		심사청구 결정
		소송결정
		민사소송 등 판결에 의한 결정
		심판청구 결정
		경정 등의 청구
		기타
	납세자 착오	기납부자 이중납부
		신고납부 후 재신고납부
		과세물건 소유자와 거주자의 이중납부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원인무효
		과세물건 착오신고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
		연부취득 취소분
	기타	
	차량. 미등기	자동차 소유권 이전
		자동차 요일제 차량
		등록세 납부 후 미등기
		자동차 과세후 폐차 또는 도난 등에 의한 말소
		기타
	법령개정	법령 등 변경

*2020년의 경우 코로나 관련 도로점용료 25% 일괄 환급으로 환급금 과다 발생, 세입금 환급 현황 자료에서는 기타로 분류됨

(2) 세출

(가) 장기계속사업 운용현황

참고자료

장기계속사업이란?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이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을 말함(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속사업과 계속비사업의 비교

구분	장기계속사업	계속비사업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약횟수	매년 1회	시작연도 1회
수익계약 여부	가능(최초계약자에 한함)	불가
대상사업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이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으로 암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행하는 사업
계약기간	1년	3년 이상
계약금액	(총사업비 중) 당해연도 예산액	계속비사업 총액

[총 괄]

장기계속사업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총계약금액	집행액 (지금까지 집행액)	계약방법			비고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 1인견적	
합계							
공사	1	7,243	3,200		○		
용역	1	34	3		○		
물품							

장기계속사업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계약명	계약일자	최초총괄금액	총계약금액	기.지급액	준공예정일자	계약방법	업체명	비고
1	공사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9.11. 25.	8,281	7,243	3,200	22.03. 31.	제한 경쟁	가림건설(주)	
2	용역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무인경비 용역	20.12. 21.	38	34	3	23.12. 31.	제한 경쟁	(주)씨피에스	

(나) 자체사업

참고자료

자체사업이란?

자체사업은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 또는 자주재원으로 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정책사업의 구조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

1) 자체사업 불용액 과다 사업현황 (집행잔액 30% 이상, 2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비율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계(33건)				4,961	2,607	2,355	47.5%	
1	감사담당관	행정쟁송수행	배상금 등	125	56	69	54.8%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기에 고정적이지 않음
2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시설 관리및홍보	공공운 영비	61	33	28	46.4%	코로나19확산 대응에 따라 장기간 시설 운영중단 (2020년 152일 운영)
3	문화예술회관	도심속문화예 술회관운영	행사실 비지원 금	31	5	26	82.9%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연 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비율	집행잔액 발생사유
4	문화예 술과	문화예술행사 지원	행사실 비지원 금	25	3	22	88.9%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5	문화예 술과	종목별생활체 육대회개최지 원	민간행 사사업 보조	140	42	99	70.4%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따라 생활체육대회 일부개최 (4개종목)
6	교통지 도과	고령자운전면 허증자진반납 교통비지원	기타보 상금	21	0	21	100.0%	市와 중복지급에 따른 미지급
7	교통지 도과	불법주정차지 도단속	사무관 리비	85	48	37	43.2%	코로나19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
8	교통지 도과	불법주정차지 도단속	공공운 영비	1,167	788	379	32.5%	코로나19로 인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
9	복지정 책과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 금운용	민간용 자금	200	10	190	95.0%	신청자(대상자) 없음
10	복지정 책과	참전유공자명 예수당추가지 원	사회보 장적수 혜금	250	172	78	31.3%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
11	안전총 괄과	재난예방및안 전사업지원	사무관 리비	535	374	161	30.1%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대응 집행 잔액 발생함.
12	도시계 획과	옥외광고물정 비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67	32	35	52.3%	옥외광고발전기금중 주말 불법광고물 정비원 보수 집행잔액
13	도시계 획과	옥외광고물정 비	기타보 상금	24	3	21	86.7%	옥외광고발전기금중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집행잔액
14	도시재 생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	자산및 물품취 득비	30	0	30	98.6%	거점시설(양3동 커뮤니티센터) 준공 미도래로 인한 구입 지연
15	건설과	도로및교량유 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70	24	46	65.6%	자체 인력활용 보도잡초 제거 등 실시에 따른 잔액
16	건설과	안전사고예방 설해대책	재료비	50	22	28	56.6%	겨울철 설해관련 재료비로 잔액 전부 지출완료

연 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비율	집행잔액 발생사유
17	건축과	건축행정서비스운영	사무관 리비	103	64	40	38.5%	코로나로 인한 서면심의 실시, 지방건축위원회참석수당 등 지출액 감소
18	토지정보과	정확한개발부 담금산정	사무관 리비	61	31	30	49.0%	매입가격 신고 건수 감소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의뢰 수수료 지출이 적게 발생
19	주민자치과	통장활동및후 생지원	통장· 이장· 반장활 동보상 금	49	0	49	100.0%	분통으로 인한 통장 현원 증가를 대비한 통장수당 집행잔액
20	주민자치과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추진	사무관 리비	28	0	28	100.0%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 추진
21	행정지원과	대체인력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603	253	350	58.0%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사유 발생건 대비 대체인력 채용 실적 저조
22	행정지원과	교육훈련프로 그램운영	공무원 교육여 비	155	70	84	54.4%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 취소
23	행정지원과	노조단체협상	사무관 리비	49	25	24	49.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사화합행사 미개최
24	행정지원과	방송시스템및C CTV운영	공공운 영비	23	1	22	97.4%	행정통신장비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비용
25	회계정보과	공용차량관리	공공운 영비	447	258	189	42.2%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서 월 단위로 집행(선금 지급 대상 아님)
26	회계정보과	정보보안및개 인정보보호추 진	공공운 영비	62	39	22	36.3%	보안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후 잔액
27	장애인 희망복 지과	자활기금운용	민간경 상사업 보조	55	32	23	41.6%	전문인력 퇴사 및 미채용

연 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비율	집행잔액 발생사유
28	장애인 희망복지 지과	서구장애인복지관수전설이 전	시설비	126	79	47	37.2%	현지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29	장애인 희망복지 지과	서구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시설비	50	3	47	94.8%	현지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30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대책 긴급의료지원 단지원및긴급 대책비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119	71	48	40.5%	기간제근로자 퇴사, 채용 지원자 없음으로 인하여 잔액발생
31	건강증 진과	아이낳기좋은 세상만들기	사회보 장적수 혜금	50	24	26	51.2%	예산 대비 사업량(출생아 수)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잔액 발생
32	건강증 진과	산모산후관리 비지원	사회보 장적수 혜금	50	23	28	55.0%	예산 대비 사업량(출생아 수)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잔액 발생
33	치매안 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설치(특별조정 교부금)	자산및 물품취 득비	51	21	30	58.4%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

<검사의견 6> 불용액 과다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필요

2020 회계연도 집행잔액(불용액 - 30%이상/ 2천만원 이상)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3건, 2,35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불용사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간 공사 중단, 행사취소 등 다양함. 당해 연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여러 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됨에 따라 불용사업이 증가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높은 수준임.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사업비 이월 등 예산조정이 요구됨.

2) 2020회계연도 재량지출 비중

최근 3년간 재량지출 비중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예산액	의무지출				재량지출액
		합계	법정의무액	보조의무액	이자의무액	
2018	486,912	383,923	86,238	297,315	370	102,989
	100%	78.85%	17.71%	61.06%	0.08%	21.15%
2019	572,910	467,519	91,410	375,801	308	105,391
	100%	81.60%	15.96%	65.59%	0.05%	18.40%
2020	741,813	640,236	87,624	552,177	435	101,577
	100%	86.31%	11.81%	74.44%	0.06%	13.69%

2020회계연도 재량지출 비중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예산액	의무지출				재량지출액
		합계	법정의무액	보조의무액	이자의무액	
합 계	741,813	640,236	87,624	552,177	435	101,577
	100%	86.31%	11.81%	74.44%	0.06%	13.69%
일반회계	719,503	637,301	86,680	550,191	430	82,202
기 타 특별회계	22,310	2,935	944	1,986	5	19,375

참고자료

[용어설명]

구 분	세부 내용
의무지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세출 및 이자지출
법정의무액	법정 전출금(특별회계 전출금, 부담금, 기금전출금 등) 법정 교부금(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손실보상, 수당 등(버스노선 손실보상, 무공영예수당, 누리과정 경비, 지방공무원 봉급, 공무원 가족수당) 구속성이 강한 지출(행정운명을 위한 기본경비, 의회관련 경비)
보조의무액	국고 보조사업, 시도 보조사업
이자의무액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재량지출액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 의무지출 외의 모든 지출

[최근(2017) 전국 기초지자체 재량지출 비중]

	의무(최고)		재량(최고)	
시(75)	태백시	80.3	안산시	71.1
평균		62.5		37.5
군(82)	칠곡군	82.8	양구군	51.4
평균		68.3		31.7
구(69)	부산북구	98.9	강남구	40.8
평균		78.6		21.4

<검사의견 7> 재량지출 비중 제고 촉구

2020회계연도 예산상 재량지출 비중은 13.6%(2018회계연도 21.15%)로, 위의「최근(2017) 전국 기초지자체 재량지출 비중표」 자치구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서구는 수입 재원의 발굴 및 불요·불급한 지출의 절감을 통한 재량지출 비중을 높이는데 구정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다) 지방보조금 사업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운영비'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사전심의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의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 ⑤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교부 대상 보조금의 종류

- (1)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 (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보조금 교부 금지 단체

- (1) 동일한 단체가 유사한 사업이나 사무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 (2)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3)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을 하는 단체 등,
- (4)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5)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6)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등,
- (7) 보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그 성과의 미미 등 이유로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8)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은 보조금 지급이 아닌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

[예산현황]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총액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비고
계	555,769	461,218	89,795	4,756	
일반회계	554,558	460,242	89,560	4,756	
기타특별회계	1,211	976	235	-	

2020년 민간 지원 지방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보조사업 (한도액 내)	비고
계	121,127	100,172	18,011	2,944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7,073	4,929	1,250	894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483	-	85	398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148	-		148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307-10)	29,165	28,169	12	98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79,463	65,216	14,080	167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4,795	1,858	2,584	353	

※ 2020년 광주 서구 지방보조금 한도액 : 3,227백만 원

지방보조금(민간) 사업 목록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명	세부사업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3,362,106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문화예술행사지원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5,0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서창만드리풍년제재현	○서창만드리풍년제지원	2,0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통문화계승	○전통문화계승지원	5,0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관광진흥업무추진	○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운영	10,000

부서명	통계목명	세부사업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문화체육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체육회운영지원	○체육회운영비	48,0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종목별생활체육 대회개최지원	○생활체육동호회운동용품지원	10,000
문화체육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종목별생활체육 대회개최지원	○종목별생활체육대회지원	140,0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일반생활체육 지도자활동지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여비	21,6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일반생활체육 지도자활동지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및운동용품비	3,6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일반생활체육 지도자활동지원	○대민활동비	10,8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어르신전담생활 체육지도자활동지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여비	16,8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어르신전담생활 체육지도자활동지원	○어르신전담생활체육 지도자피복비및운동용품비	2,8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어르신전담생활 체육지도자활동지원	○대민활동비	8,4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생활체육건강교실운영	○건강건강교실운영지원(2개소)	2,4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생활체육건강교실운영	○생활체육광장수업 강사수당(4개소)	3,52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	○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	30,000
문화체육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장애인체육회운영지원	○서구장애인체육회운영비	69,000
문화체육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장애인체육 활성화사업지원	○ 서구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3,0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활동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여비	9,6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활동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및운동용품비	1,600
문화체육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활동지원	○대민활동비	4,800
경제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식재산창출지원 (국가직접지원)	○지식재산권리화지원	50,000
경제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기업지원	10,000
경제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소상공인희망 길라잡이운영	○ 경영환경개선지원	30,000
경제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무인항공 공동방제지원	○친환경무인항공공동방제지원	10,000
일자리정책 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적경제운영지원	○사회적경제조직육성사업	20,000
도서관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작은도서관운영	○사립작은도서관운영지원	84,000

부서명	통계목명	세부사업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청소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지원 및감량화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지원사업(업소)	30,000
기후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연환경보전	○자연보호활동지원사업	7,500
기후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전기자동차급속충전시설 설치지원	○급속공용충전기신설지원	10,000
교통지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사고예방사업추진등	20,000
복지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지원	17,860
복지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인건비	53,605
복지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간제근로자	30,850
복지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워크숍	5,000
복지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동협의체우수사례발표대회	5,000
복지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민관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지역대회	5,000
복지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복지리더아카데미	10,800
복지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운영지원	7,200
복지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지원	○보훈단체(10개)	71,090
복지정책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훈단체지원	○보훈단체(9개)	88,76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추가지원	○복지관종사자특별수당 추가지원	27,000
여성이동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권익신장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여성친화도시조성공모사업	40,000
여성이동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여성권익신장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여성친화기업인증업체지원	10,000
여성이동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양성평등문화 확산	○맘처럼돌봄프로그램	2,800
여성이동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양성평등문화 확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예방캠페인	2,000
여성이동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및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조기정착지원	5,500
여성이동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행복정착프로그램	○다문화가족행복정착프로그램	8,000
여성이동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비추가지급	○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비 추가지원	370,000

부서명	통계목명	세부사업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여성아동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추 가지원	○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추가지원	172,800
여성아동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 조(자체재원)	아동시설환경개선비	○어린이집환경개선비(212개소)	106,000
여성아동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 조(자체재원)	아동시설환경개선비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 (47개소)	23,500
여성아동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별 수당추가지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특별수당 추가지원(120명)	71,800
여성아동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아동센터활성화	○지역아동센터김장나눔행사	7,000
여성아동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공동생활가정종사자특별 수당추가지원	○공동생활가정종사자 특별수당추가지원	12,000
여성아동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 인건비지원	○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 인건비지원	58,800
여성아동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종사자명절 수당지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명절수당(120명)	12,000
여성아동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 조(자체재원)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	7,200
교육지원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학교밖청소년사업지원	○청소년자립을위한 꿈키움배움학교운영	5,000
안전총괄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안전문화운동역량강화	○안전도시활동지원	5,500
건축주택과	민간자본사업보 조(자체재원)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 정지원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	30,00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통장활동및후생지원	○통장역량강화워크숍	5,00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추진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지원	150,000
주민자치과	민간자본사업보 조(자체재원)	주민주도형마을 만들기사업추진	○마을커뮤니티공간지원사업	6,00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지원	7,00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사업	48,00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사업	28,60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한국자유총연맹활성화사업	4,00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재향군인회활성화사업	7,10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적십자사봉사회활동사업	3,000

부서명	통계목명	세부사업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주민자치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서구새마을회운영비	50,362
주민자치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운영비	25,718
주민자치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운영비	19,000
주민자치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단체운영지원	○서구재향군인회운영비	7,000
주민자치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공유도시조성활성화 프로그램운영	○공유활성화지원사업	6,000
행정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인권역량강화	○지역사회통일기반조성사업	15,000
행정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인권역량강화	○자문위원역사통일안보연수	20,000
행정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인권역량강화	○지역사회인권문화확산지원	15,000
행정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주민참여예산)	○주먹밥재료및행사물품구입	3,000
행정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주민참여예산)	○자원봉사자실비보상	200
행정지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주민참여예산)	○홍보비(현수막등)	200
회계정보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정보화마을운영	○4대보험및퇴직금	3,800
통합돌봄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교통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교통비	64,800
통합돌봄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교통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교통비	2,400
고령사회정 책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로당양곡지원	○경로당양곡지원	25,324
고령사회정 책과	민간자본사업보 조(자체재원)	경로당운영지원(경로당개 보수및비품지원사업)	○비품구입지원	130,000
고령사회정 책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대한노인회서구지회운영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운영비지원	63,800
고령사회정 책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추가지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추가지원	17,400
고령사회정 책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경로식당조리인력지원	○경로식당조리인력지원	121,097
고령사회정 책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 원사업확대(추가지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사업확대(추가지원)	388,000
고령사회정 책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노인일자리사업종사자선 진지견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사자선진지견학	5,000
장애인희망 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종사자특별 수당지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추가지원	4,680

부서명	통계목명	세부사업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장애인희망 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추가지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추가지원	85,800
장애인희망 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시설냉난방비지원	○장애인복지시설냉난방비지원	30,340
장애인희망 복지과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서구장애인협회운영지원	○서구장애인협회운영비	27,000
장애인희망 복지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발달장애인가방문서비스지원	○재가방문서비스지원	4,000
장애인희망 복지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장애인복지지원업무추진	○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	17,000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430,331	510,229	679,863
지방보조금(민간)	2,486	3,047	3,362
비율	58	60	49

※ 일반회계 기준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사업수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민간경상보조	32	894	정산성과평가 진행 중	'21.7. 홈페이지 공개
민간행사보조	4	148	정산성과평가 진행 중	'21.7. 홈페이지 공개

<검사의견 8> 예산심의 시 지방보조금 사업 면밀 검토

위에 제시한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집행(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결산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총량제를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단기의 결산검사기간안에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편성대상 및 교부금지등 적법성을 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회는 이 분야에 대하여 사무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임.

(라)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 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020년 업무추진비(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4급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현액	지출 총액	월별 지출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30,780	126,786	14,117	10,447	11,058	12,128	11,740	11,145	12,783	8,435	7,656	9,076	8,045	10,159
구청장	58,000	54,622	6,588	5,126	5,010	5,748	5,694	4,365	6,234	3,703	2,212	3,927	2,943	3,073
부구청장	39,630	39,129	4,496	2,458	3,275	3,798	3,438	3,587	3,418	3,250	2,694	3,469	3,166	2,080
문화경제국장	3,300	3,300	281	163	284	237	529	303	44.5	-	52	90	390	926.5
환경교통국장	3,300	3,283	426	702	427	614	788	116	210					
복지교육국장	3,250	3,250	200	140	238	132	357.6	182	83	224	239	326	275	853.4
안전도시국장	3,300	3,300			396	192	27	384		40	971	460	704	126
자치행정국장	3,300	3,294	1,059	225	179	160	-	174	270	528	307	260	133	-
통합돌봄추진단장	3,300	3,295	309	329	272	428	503	126	378	248	180	275	110	137
보건소장	3,300	3,300	99	524	280	40	165	745	631	-	-	-	-	816
의회사무국장	10,100	10,013	659	780	697	779	238	1,163	1,514	442	1,001	269	324	2,147
합계	45,708	44,929	5,828	2,614	5,917	4,403	2,945	2,904	2,999	3,163	4,053	3,071	3,835	3,196
의장	32,508	31,729	4,983	2,418	4,719	3,502	2,157	322	1,483	2,285	2,790	1,913	2,268	2,890
부의장	13,200	13,200	845	196	1,198	901	787	2,582	1,517	878	1,264	1,159	1,567	307

2020회계연도 광주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구청장 (A)	의회 의장 (B)	B/A	부구청장 (C)	의회 부의장 (D)	D/C	비고
집행액	48	32	66.6%	39	13	33.3%	

〈점사의견 9〉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

서구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보이고 있는 2월(설날), 9월(추석), 11~12월(연말)에 편중 집행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업무 추진의 진도에 따라 연중 고르게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마) 국외출장

2019년도 국외출장 실적

내 용	인 원	국가	예산액	지출액	비 고
소계 (28건)	357		886,055	688,331	
2018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유공자 해외연수	1	영국, 프랑스	4,370	4,370	
2019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2	호주	24,052	24,052	
2019 정부혁신 재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8	호주	53,000	51,526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 해외 문화 유산 탐방단	31	중국	25,000	24,999	
2019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7	이탈리아	60,000	59,703	
2019 치매관리 선진기관 탐방단	6	호주	14,500	14,224	
2019 환경미화원 해외 견학	2	호주	4,000	4,000	
2019 의원 공무국외출장	3	호주	44,200	20,424	
2019 세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5	호주	10,587	10,587	
교통분야 공무국외연수	8	대만	10,000	7,252	
2019년 서구 공직자 정책개발 연구모임	5	아랍 에미리트	9,000	7,500	
우리동네캐릭터 대축제 참여자 국외연수	5	베트남	60,332	4,303	
금호1동 주민자치회 국외연수	4	베트남	60,332	4,075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	23	베트남, 독일 등	120,000	94,257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기관표창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	이탈리아	15,000	6,984	
GSB 서구청 방송국 국외연수	17	베트남	9,150	9,106	
중견간부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10	미국, 이탈리아 등	45,000	45,000	
공직자 배낭연수	158	북미, 유럽 등	230,000	228,186	
안중근의사 의거 110주년 기념 남북공동 하얼빈행사	2	중국		1,862	집중관리예산
2019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국외연수	1	체코, 독일		670	
2019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유공자 공무국외출장	1	덴마크, 노르웨이	60,332	1,462	
2019 자활사업 유공자 공무 국외출장	1	네덜란드		1,557	
2019 마을공동체 국외연수	2	일본		2,700	
부탄 행복정책연수	3	부탄		9,862	
전남일보사 주관 광주, 전남 홍보담당 국외연수	2	러시아, 중국	3,000	4,980	
2019년 선진보육 벤치마킹을 위한 광주서구어린이집연합회 보육시설 교직원 국외연수	2	베트남	2,200	2,830	부족분(630) 집중관리예산
커뮤니티케어 선진지 국외연수	8	덴마크	12,000	29,600	부족분(17,600) 집중관리예산
고령친화도시 해외 선진지 견학	8	호주	10,000	12,260	부족분(2,260) 집중관리예산

참고자료

[참고사항] (예시) 장기국외훈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운영개요

- 선발인원: 2명 ~ 4명
- 파견기간: 1년 이상
- 훈련과정: 직무훈련(현장, 일반)
- 대 상: 8급 내지 7급(근무경력 5년이상 10년이내)
- 훈련방법: 현장직무훈련(해외기관의 인턴 형태로 실제근무), 일반직무훈련(국정과제 및 개인 연구과제)

<검사의견 10> 영미 등 지방자치 선진국 장기연수 적극 추진

서구는 2019회계연도 중 직원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공직자 배낭연수 등 총 28건을 실시하여, 총예산 8억 8,700백만 원 중 6억 8,900백만 원을 집행하였음.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공무원의 자기진작 차원의 것들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수내용은 많지 않음. 지금의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수대상국도 유럽 및 아시아 등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 기간도 지극히 단기여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금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선진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설계 시 그 대상국을 영국 및 미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하고, 기간도 최소 1년 이상(회계연도 및 회기 1년 고려)의 장기 연수로 하며, 연수 대상 선발 시 10년 내외 근무경력이 있는 의회 및 집행부 공무원(각각 대상국별 적어도 1명 이상)으로 하고, 향후 집행부의 해외행사 및 의회 의원의 해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

(바) 민간위탁사업 운영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2020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예산잔액	법적근거	감사실적
합계(65건)				53,922	53,843	79		
1	문화예술과 (3건)	서구문화센터운영지원	민간위탁금	345	345	0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자체감사 1회
2		서창한옥문화관운영	민간위탁금	87	87	0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연1회 자체감사
3		농성문화의집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75	75	0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자체감사 1회
4	도서관과 (2건)	작은도서관운영	민간위탁금	43	43	0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위탁운영)	연1회 자체감사
5		서구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61	161	0	<도서관법>제27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1항	연1회 자체감사
6	청소행정과 (7건)	가정청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1,061	11,061	0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연1회 (20년도예산 - 21.4월 감사 예정)
7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민간위탁금	173	173	0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연1회 (20년도예산 - 21.1월 실시)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예산잔액	법적근거	감사실적
8		재활용품및 대형폐기물수거처리 위탁운영	민간위 탁금	3,450	3,390	60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연1회 (20년도예산 - 21.1월 실시)
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및감량화	민간위 탁금	623	622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 지원(매월)
10		재활용품수집지원	민간위 탁금	10	4	6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형광등 운송비 지원 시비 보조사업
11		환경미화원 안전용품지원	민간위 탁금	5	5	0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연1회 (20년도예산 - 21.4월 감사 예정)
12		가정청소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시설 장비지원	민간위 탁금	30	30	0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연1회 (20년도예산 - 21.4월 감사 예정)
13	복지정 책과 (1건)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보조)(생활)	민간위 탁금	2,902	2,902	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연1회 정산검사
14	여성가 족과 (1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 탁금	10	10	0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반기별 정산검사
15	교육청 청소년과 (12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민간위 탁금	197	197	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분기별 1회
1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민간위 탁금	149	149	0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분기별 1회
17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민간위 탁금	92	92	0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연 1회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 탁금	123	123	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분기별 1회
19		청소년안전망	민간위 탁금	97	97	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분기별 1회
20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운영	민간위 탁금	125	125	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분기별 1회
21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 탁금	265	265	0	광주광역시서구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 1회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예산잔액	법적근거	감사실적
22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3	143	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분기별 1회
2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	23	23	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분기별 1회
2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공간사용료)	민간위탁금	15	15	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연 1회
2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무상급식)	민간위탁금	17	17	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분기별 1회
2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공간사용료)	민간위탁금	10	10	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연 1회
27	도시계획과 (1건)	옥외광고물관리	민간위탁금	246	246	0	○ 현수막 게시대 위탁 -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 8조 ○ 옥외현판게시대위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 8조 ○ 안전점검업무위탁 -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1조	연1회
28	건설과 (1건)	하수도유지보수및 준설지원	민간위탁금	18	18	0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2020년 정부합동감사
29	주민자치과 (9건)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540	540	0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연1회 자체 점검/분기별 정산검사
30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지원	민간위탁금	16	16	0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연1회 자체 점검/분기별 정산검사
31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민간위탁금	58	58	0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연1회 자체 점검/분기별 정산검사
32		자원봉사센터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10	10	0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연1회 자체 점검/분기별 정산검사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예산잔액	법적근거	감사실적
33		동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0	20	0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연1회 자체 점검/분기별 정산검사
34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85	185	0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연1회 자체 점검
35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원	민간위탁금	80	80	0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연1회 자체 점검
36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원(보조)	민간위탁금	78	78	0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연1회 자체 점검
37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원(보조)	민간위탁금	39	39	0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연1회 자체 점검
38	행정지원과 (1건)	직장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금	335	335	0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령	어린이집 운영 결산 회계감사-삼덕회계법인
39	통합돌봄과 (2건)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간위탁금	1,686	1,686	0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제6조 광주광역시서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23조, 제24조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23조	①통합돌봄과-357(2021.1.8.) (정산제출요청) ②통합돌봄과-3425(2021.3.19.) (정산결과제출)
40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시범사업	민간위탁금	30	30	0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제24조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23조	①통합돌봄과-377(2021.1.11.) (정산제출요청) ②통합돌봄과-1265(2021.2.1.) (복명서)
41	고령사회정책과 (1건)	노인복지시설지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667	667	0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연 2회 지도점검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예산잔액	법적근거	감사실적
42	장애인 희망복지 지과 (14건)	장애인복지 서비스지원 (장애인복지기금)	민간위 탁금	5	5	0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연1회
4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 탁금	4,957	4,957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1회
44		복지일자리	민간위 탁금	132	132	0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연1회
45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민간위 탁금	18,465	18,465	0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 률	연1회
4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민간위 탁금	576	576	0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관리에관한법률	연1회
47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지원	민간위 탁금	1,010	1,010	0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 률	연1회
48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민간위 탁금	963	963	0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연1회
49		장애인주택개보수	민간위 탁금	20	20	0	2020년 장애인주택개보수 지원계획안	연1회
5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민간위 탁금	17	17	0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연1회
51		장애인복지관운영	민간위 탁금	1,215	1,204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제24조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 간위탁에관한조례제23조	2020년 민간위탁 특정감사 실시 (감사담당관)
52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민간위 탁금	8	8	0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 원에관한법률	연1회
53		보장구수리 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민간위 탁금	20	20	0	광주광역시장애인휠체어 등수리지원조례	연1회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예산잔액	법적근거	감사실적
54		활동지원가산급여	민간위탁금	68	68	0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연1회
55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민간위탁금	531	531	0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연1회
56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민간위탁금	225	225	0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연1회
57	감염병관리과(1건)	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및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금	7	7	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 1회 자체감사
5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민간위탁금	1	1	0	모자보건법제3조및10조	없음(보건복지부 지정 일괄 위탁)
59	건강증진과(3건)	선천성난청검사	민간위탁금	0	0	0	모자보건법제3조및10조	없음(보건복지부 지정 일괄 위탁)
60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위탁운영	민간위탁금	69	69	0	지역보건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2회(사업 집행 점검)
6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민간위탁금	724	724	0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회계법인 감사실시
62	보건위생과(3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위생관리 시스템체계 구축	민간위탁금	6	6	0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회계법인 감사실시
63		노인복지시설등 공공급식관리지원사업운영	민간위탁금	50	50	0	식품위생법 제7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회계법인 감사실시
64	치매안심센터(2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	민간위탁금	553	553	0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반기별 정산검사
65		열린마음상담센터운영지원	민간위탁금	60	60	0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반기별 정산검사

참고자료

[참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0호)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사항(생략)

[참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23조(지휘·감독·감사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하거나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감사결과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예산의 이용·이체, 전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

1) 이용 - 이체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移用)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2) 전용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참고]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참고] 전용금지 경비 :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라. 계속비

참고자료

[법적근거]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지방자치법 제128조).

[의무적 계속비 편성사업]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계속사업)으로서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42조).

2020회계연도 계속비이월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부서명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비고
합 계	11	40,706	17,416	30,429	
문화체육과	1	2,000	0	2,000	
청소행정과	1	650	61	589	
교육지원과	1	2,131	259	2,022	
도시재생과	5	21,990	9,656	12,764	
고령사회정책과	3	13,934	7,440	13,053	

2020회계연도 계속비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현액 ㉔	지출액 ㉕	이월액 ㉖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11건)			40,706	17,416	30,429		
문화체육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설 비	2,000	0	2,000	행정절차 이행(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등에 따른 연내 사업완료 불가	

과목			예산현액 ㉔	지출액 ㉕	이월액 ㉖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11건)			40,706	17,416	30,429		
청소행정과	생활자원회수 센터조성	시 설 비	650	61	589	2020년~ 2022년(3년간) 지속사업(재활용선별장 개축 및 선별시설 설치)	
교육지원과	청소년시설확 충및기능보강 (전환사업)	시 설 비	2,007	255	1,903	2022년까지 계속 사업	
		감 리 비	93	0	93		
		시설부대비	31	5	26		
도시재생과	근린재생형 (오천마을재 생프로젝트)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0	16	4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계속비 이월	
		사무관리비	134	99	35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계속비 이월	
		공공운영비	3	3	1		
		행사운영비	636	127	545		
		국내여비	7	0	7		
		연구용역비	200	0	200		
		행사실비 지 원 금	24	1	23		
		민간경상 사업보조	207	124	83		
		시 설 비	4,860	1,126	4,239		
		감 리 비	40	0	40		
		시설부대비	11	2	10		
		민간자본 사업보조	69	25	44		
		민간위탁사 업 비	900	0	900		
		자산및물품 취 득 비	38	7	31		
	우리동네살리 기(문화와예 술이꿈틀대는 창작농성골)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0	16	4		사업기간 연장
사무관리비		126	75	50			
공공운영비		9	6	4			
행사운영비		285	184	38			
국내여비		3	0	2			

과목			예산현액 ㉔	지출액 ㉕	이월액 ㉖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11건)			40,706	17,416	30,429		
		행사실비 지 원 금	5	0	4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30	20		
		시 설 비	5,108	2,911	1,612		
		감 리 비	30	28	26		
		시설부대비	7	2	5		
		민간위탁 사 업 비	590	251	339		
		자산및물품 취 득 비	151	5	76		
	주거지지원형 (벚꽃향기가 득한농성공동 체마을)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20	16	4	계속비사업('19~'22)으로 잔여사업비 이월	
		사무관리비	164	122	51		
		공공운영비	4	1	3		
		행사운영비	40	40	8		
		국내여비	4	0	4		
		연구용역비	30	27	30		
		행사실비 지 원 금	3	1	2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40	10		
		시 설 비	4,043	2,894	1,151		
		시설부대비	6	5	1		
	민간자본 사업보조	10	0	10			
	민간위탁 사 업 비	900	400	500			
	자산및물품 취 득 비	40	10	30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선(양3 동새뜰)사업	사무관리비	22	20	20	계속비 이월 연장(2021년까지)으로 인한 사업비 전체 이월	
		시 설 비	1,112	967	652		
		감 리 비	7	7	2		

과목			예산현액 ㉔	지출액 ㉕	이월액 ㉖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11건)			40,706	17,416	30,429		
	양동발산마을 뽕뽕다리 (인도교) 개설사업	시 설 비	2,000	65	1,944	계속비 사업으로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 이월	
고령사회 정 책 과	노인여가복지 시설건립	시 설 비	10,783	4,289	9,902	2022년 준공예정	
	복합커뮤니티 센터건립 (문예회관)	시 설 비	2,419	2,419	2,419		
	노인여가복지 시설건립 (특별교부세)	시 설 비	732	732	732		

마. 명시이월비

참고자료

[법적근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임(지방재정법 제50조).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 제도는 회계연도를 넘어 그 집행이 가능한 사업예산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임. 의회가 명시이월비로 승인하면 이월된 회계연도에서의 예산심사가 면제되고, 이월된 예산은 배정절차 없이(이월과 동시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간주) 바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게 됨. 사업추진 기간이 2년으로 보장되어, 면밀한 사업 준비와 집행에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선호하는 사업집행방법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명시이월비 예산제도가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임.

[운용례(국가)] 명시이월비 제도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출행위가 당해 연도 안에 종료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강제하는 경우 사업내용에 차질이 생기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추진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됨.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의 장비획득사업은 당해 사업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장비나 수리부속이 많아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에 맞추어 무리하게 외산장비 도입을 추진할 경우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리한 도입여건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비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임.

참고자료

[참고] 국가재정법 제24조(명시이월비)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총 괄]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부서명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비고
합 계	70	21,780	7,572	13,592	
기획실	1	30	0	30	
문화체육과	5	1,849	580	1,265	
경제과	11	3,762	2,048	1,714	
일자리정책과	1	142	0	142	
청소행정과	2	329	171	158	
공원녹지과	8	2,270	702	1,535	
교통지도과	4	1,899	639	1,259	
복지정책과	1	85	5	80	

부서명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비고
합 계	70	21,780	7,572	13,592	
여성아동복지과	6	1,527	97	1,360	
안전총괄과	3	1,073	325	747	
도시재생과	1	30	0	30	
건설과	17	4,775	1,455	3,120	
건축주택과	5	964	330	634	
주민자치과	3	390	246	138	
회계정보과	2	2,100	740	860	
고령사회정책과	1	206	163	40	
보건행정과	1	350	0	350	

[세 부]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	㉡	㉢		
합 계(70건)			21,780	7,572	13,592		
기 획 실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행사운영비	30	0	30	코로나19 확산으로 행복정책 페스티벌 연기(다중집합행사)	
문화체육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14	7	6	2021년도 종료 사업 (사업기간 : 2020. 7. ~ 2021. 2.)	
		행사실비 지원금	0	0	0		
		민간경상사업보조	400	200	200		
	관광진흥업무추진	연구용역비	100	67	29	사업기간 연장(2021년)에 따른 명시이월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70건)			21,780	7,572	13,592		
	등록문화재보수정비	시 설 비	890	305	585	○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종합정비 계획 21년 3월 완공예정 ○천주교광주대교구청브레디관보수정비21년6월완공예정	
	상무불더링인공암벽장설치	시 설 비	150	0	150	○ 기존 인공암벽장 설치 부지인 상무시민공원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불더링월 인공암벽장 추가 조성사업 추진 중이나 ○ 기존 인공암벽장에 대한 시설 추가조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의거 개별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 의회 등의 및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市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의 협의 등 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	
	'7.28.~8.11. 호우피해항구 복구비	시 설 비	295	0	295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복구비 특별교부세가 해당부서에 교부 결정(2020년 10월)됨에 따라 조속히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2020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움	
경 제 과	2020양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 설 비	211	7	205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설치 점포 확대 등 추가 사업 진행 예정 ○추가사업진행시사업변경승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계약심사등행정절차이행이 필요함.	
		감 리 비	2	0	2		
	2020양동복개 상가화재알림 시설설치사업	시 설 비	203	7	197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설치 점포 확대 등 추가 사업 진행 예정 ○추가사업진행시사업변경승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계약심사등행정절차이행이필요함	
		감 리 비	2	0	2		
	2020양동담전길 시장화재알림시 설설치사업	시 설 비	74	2	72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설치 점포 확대 등 추가 사업 진행 예정 ○추가사업진행시사업변경승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계약심사등행정절차이행이필요함	
		감 리 비	1	0	1		
	2020양동수산 시장화재알림 시설설치사업	시 설 비	70	2	68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설치 점포 확대 등 추가 사업 진행 예정 ○추가사업진행시사업변경승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계약심사등행정절차이행이필요함	
		감 리 비	1	0	1		
	2020양동건어물 시장화재알림시 설설치사업	시 설 비	40	1	39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설치 점포 확대 등 추가 사업 진행 예정 ○추가사업진행시사업변경승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계약심사등행정절차이행이필요함	
		감 리 비	0	0	0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70건)			21,780	7,572	13,592		
	2020양동산업 용품시장화재 알림시설설치 사업	시 설 비	75	2	72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설치 점포 확대 등 추가 사업 진행 예정 ○ 추가사업진행시사업변경승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계약심사등행정절차이행이필요함	
		감 리 비	1	0	1		
	2020양동경열로 시장화재알림 시설설치사업	시 설 비	58	2	56	○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설치 점포 확대 등 추가 사업 진행 예정 ○ 추가사업진행시사업변경승인(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계약심사등행정절차이행이필요함	
		감 리 비	0	0	0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 장조성	시 설 비	2,762	1,949	813	보상결정액 미수용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및 국유재산 매수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능	
	농업기반시설 물(농로, 용배수)유지관리	시 설 비	112	71	41	주민의견 수렴 및 작물 경작에 따라 연내 공사 준공 불가	
	서창동배수로 정비	시 설 비	99	4	95	주민의견 수렴 및 공사구간 변경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	
		시설부대비	1	0	1		
	덕흥동60번지 선농로포장	시 설 비	50		50	9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연내 공사 준공 불가	
	일 자 리 정 책 과	농성역청년창업 플랫폼운영	시 설 비	142	0	142	광주도시철도공사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운영자 선정이 2020.10.12. 결정되어 청년창업카페 조성 리모델링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함
청소행정과	집중호우폐기 물처리시설재 해복구	자산및물품 취 득 비	129	0	129	조달물품 구입 구매 기간(발주 및 납품기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연내 접수 및 납품이 어려움 -'20.12월발주 -'21.2월납품예정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구축사 업	시 설 비	200	171	29	감량기 구축 시 설치공간 필요 및 시설부담금 발생(유지관리비, 전기세)으로, 시설의 신청·동의를 따라 사업 추진 -상반기2개소(20.5~7월)/하반기4개소추진중(20.9~11월) -잔여사업비(1개소분)은용두동(실버마을)에설치할예정이나,감량기설치장소내배수관로공사예정으로 21년도추진예정	
공원녹지과	7.28.~8.11. 집 중호우피해시 설복구비(공 공시설)	시 설 비	63	0	63	제3회 추경편성에 따른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70건)			21,780	7,572	13,592		
	힐스테이트3단지주변수목공사	시 설 비	30		30	제3회추경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	
	상무4-1근린공원생활환경숲조성사업	시 설 비	400	329	71	상무4-1근린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사업 진행	
	상상력과창의력어른아이공원조성사업	시 설 비	200	0	200	공원 이용자(지역주민 및 어린이)의견 수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내방어린이공원정비	시 설 비	500	14	482	공원 이용자(지역주민 및 어린이)의견 수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노후어린이공원(장수,햇님,풍금)정비	시 설 비	900	338	562	공원 이용자(지역주민 및 어린이)의견 수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도시공원실패정비사업	시 설 비	100	21	50	2020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제2회 추경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기간 소요	
	전평호수공원야간경관조성사업	시 설 비	77	0	77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모 공고, 제안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제안공고 60일 이상)에 따라 연내 용역완료 불가	
교통지도과	내집주차장갯기사업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52	6	46	시비 교부결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 편성 및 사업지연	
	우리마을공영주차장조성	시 설 비	1,000	146	854	사업대상지 선정 후 토지소유자와 매매협의 시 감정평가금액 불응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양동전통시장연합공영주차장조성	시 설 비	691	487	203	보상결정액 미수용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및 국유재산 매수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가변주차제활성화지원사업	시 설 비	156	0	156	동절기 공사 완공시기를 고려한 사업비 지급일자 고려 필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운영	사무관리비	5	5	0	○ 공모사업 선정(2020.8.26.) 이후 보건복지부 대면컨설팅(2020.9.25.) 실시 ○ 사업계획분석을 토대로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사업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작성제출(2020.11.10)이후 사업추진 ※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사회보장적수혜금	80	0	80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70건)			21,780	7,572	13,592		
여성아동 복지과	주민생활혁신 사례확산지원	사무관리비	4	0	4	행안부 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지원 사업으로 11월 워크숍 및 컨설팅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 여 2021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 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공공운영비	1		1		
		시 설 비	65		65		
		시설부대비	1		1		
	어린이집환경 개선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282	97	184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위해 시설 증축이 필요함. 건물증축에 따른 분야별(건축, 통신, 전기, 소방)설계도서 1차 작성 및 건축 물신고필증 발급 후, 설계도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됨	
	국공립어린이 집확충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120	0	120	기정액(120,000) : 설계도서 검토 과정에서 불법 증축 사항이 발견 되어 아파트 입주민 3분의2 이상 의 동의서를 받는 등 행위허가 과 정이 추가되어 이월 필요	
	국공립유치 어린이집신축 이전 (특별교부세)	민 간 위 탁 사 업 비	500	0	500	2021. 8월 준공예정	
	공공건축그린 리모델링 (화정어린이집)	시 설 비	416		416	'20. 8. 14. 예산 확정내시 공문 내려왔으며 2회 추경 예산에 반영 후 건축사와 협의하여 설계도서 작성을 진행하였으나 화정어린이 집 현황도면이 없어 실시설계 기 간이 연장되어 설계도서 납품예정 일이 '20. 12월로 예상되며 연내 착공이 어려운 상황에 완공예정일 '21. 3월로 이월 필요	
	다함께돌봄센 터설치비지원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140	0	70	센터 2개소 예산 중 1개소 내년 추진 예정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설명회 개최가 어 려워 주민동의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 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됨.	
	안전총괄과	유관기관업무 지원및협조	자산및물품 취 득 비	23	11	11	기존 설치 예정지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도시계획변경에 포함되어 설치 부지 재선정에 따 른 사업 지연
자율방범대초 소기능보강사 업		시 설 비	50	21	29	기존 설치 예정지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로 도시계획변경 에 포함되어 있어 부지 재선정에 따른 지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세동소하천 정비)		시 설 비	994	293	701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중으로 용역 미완료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 세동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진행중.'19.06월(일시중지 '20.4.8.)	
	시설부대비	6	0	6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70건)			21,780	7,572	13,59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	자산및물품 취 득 비	30	0	30	커뮤니티센터건립 후 자산구입 예정	
건 설 과	절골마을진입 도로확장	시 설 비	200	71	129	절골마을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중. 도시 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 보상을 위 한 토지분할, 감정평가 등 보상금 액 산정 이후 보상 협의 진행	
	농성동KT&G 주변도로개설	시 설 비	300	295	5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협의 진행중임. 이월 후 추가 보상 진행. 2021년 시비(500,000천원) 요청하였으며, 예산 확보 후 추가 보상 진행	
	금호동종원펠 리스빌주변도 로개설	시 설 비	250	14	236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 협의 진행 중임. 이월후보상협의실시.	
	양동광제사주 변도로개설	시 설 비	270	203	67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로 공사비 확보 후 공사 시행 예정. 2021년 시비(150,000천원) 요청.	
	마북동향림사 주변도로개설	시 설 비	200	14	186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 협의 진행 중. 이월 후 보상 협의 실시.	
	도로및교량유 지관리	시 설 비	540	465	75	도로유지관리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연중 사업 추진 중 으로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도 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안전한보행환 경조성	시 설 비	200	100	100	절골마을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중. 도시 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 보상을 위 한 토지분할, 감정평가 등 보상금 액 산정 이후 보상 협의 진행	
	서구용두동자 연마을도로 확·포장	시 설 비	400	288	112	도로확장 공사 진행중이나, 일부 보상 협의 지연중임. 이월후보상협의완료되면공사완료 예정도로개설을위한보상협의진행 중	
	국가하천유지 관리자전거도 로(광주천)	시 설 비	420	15	405	2020년 2회 추경 예산 반영, 실시 설계 및 공사 시행까지 기간 소요	
	양동육교등8 개소보도육교 보수	시 설 비	700	0	700	2020년 2회 추경 반영 예산, 실시 설계 및 공사 시행 기간 소요	
	양3동주민센 타-발산교구간 도로정비공사	시 설 비	35	0	35	제3회추경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 에 따른 이월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70건)			21,780	7,572	13,592		
	화정4동 호반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시 설 비	50	0	50	제3회추경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	
	유덕동 유덕교회 주변 외1개소 도로정비(자체사업)	시 설 비	100		100	제3회추경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	
	화정동 774-1번 지하수도이설공사	시 설 비	200	61	139	하수관로 정비 중 터파기 구간 내 도시가스 배관이 간섭되어 배관 이설 후 공사 재개하기 위한 기간 소요	
	광천동 등비굴착보수 하수도 정비공사	시 설 비	200		200	'20년 2회 추경 반영,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시행까지 기간 소요	
	하수악취저감사업	시 설 비	600	0	600	'20년 2회 추경 반영,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시행까지 기간 소요	
	'7.28.~8.11. 호우피해항구 복구비	시 설 비	110	0	110	'20년 3회추경 반영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시 설 비	600	126	474	지원대상 단지 선정(2020.5.14.) 후 서류검토 및 보완 등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 어려움 (미제출4,검토13,공사3)	
		시설부대비	1	0	1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	10	20	보조금 교부결정(2020.7.31.) 후 서류검토등으로 인해 연내 사업완료 어려움(검토3)	
	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시설개보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11	107	4	보조금 교부결정(2020.5.18.) 후 관리주체의 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사업완료 어려움(공사중7)	
	노후중소형아파트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0	80	101	보조금 교부결정(2020.9.28.) 후 서류검토 및 보완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 어려움(교부결정2,검토7)	
	공동주택비정규직근무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1	8	34	市 보조금 교부결정(2020.6.23.) 후 서류검토 및 보완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 어려움(검토4,미제출1)	
주민자치과	유덕동버들마을다목적센터설치	시 설 비	300	227	73	○ 지구단위계획 변경(공공청사-다목적센터) 추진에 따른 용역 실시 ○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 - 21. 9월 다목적센터 개관 예정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70건)			21,780	7,572	13,592		
	주민자치회시 범운영지원	시 설 비	50	4	40	상무2동주민자치회 사무국 공간으 로 조성예정인 동청사 내 공간을 타 단체에서 기 사용하고 있어 금 년도에 지출불가능한 사항임. 연말 까지 기 사용단체가 이주할 계획 으로 해당 예산을 이월시켜 내년 초에 공간조성계획에 따라 집행코 자 함.	
		자산및물품 취 득 비	20	14	6		
	상무2동 행정 복지센터운영 물품구입	자산및물품 취 득 비	20	0	20	제3회 추경 반영 및 리모델링 공사 후 사업 시행코자 이월	
회계정보과	농성2동주민 센터신축	시 설 비	1,500	740	260	당초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단독 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증 가하는 다양한 공간수요에 유기적 인 대응을 위하여 서구청사 증축사 업과 복합추진으로 사업계획이 변 경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움	
		금호1동주민 센터증축	시 설 비	536	0		
		자산및물품 취 득 비	64	0	64	2021년 상반기 공사 준공 예정으 로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	
고령사회 정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206	163	40	시2020년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변 경내시통보 -2021.3.31.공사완료예정	
보건행정과	보건소상시선 별진료소구축	시 설 비	350	0	350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으로 연내 사 업완료 불가	

바. 사고이월비

참고자료

[법적근거]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과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사고이월비로서 이월 사용이 가능함(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사고이월의 전형적인 예)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④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2항)
 - ①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 ②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 ③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①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

[총괄]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부서명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합 계	86	49,202	22,341	26,227	
기 획 실	2	153	38	92	
문 화 체 육 과	1	1,783	240	1,543	
경 제 과	8	3,718	1,357	2,347	
도 서 관 과	1	44	12	24	
청 소 행 정 과	2	278	0	278	
공 원 녹 지 과	10	1,577	561	861	
기 후 환 경 과	2	591	64	527	
교 통 지 도 과	7	13,489	1,825	11,664	
여 성 아 동 복 지 과	7	6,096	5,615	474	
안 전 총 괄 과	5	1,509	996	513	
도 시 재 생 과	5	2,495	1,626	869	
건 설 과	13	4,029	1,891	2,137	
건 축 지 도 과	3	378	204	174	
주 민 자 치 과	6	1,159	1,022	58	
회 계 정 보 과	5	,2348	1,663	641	
고 령 사 회 정 책 과	1	3,327	528	2,799	
장 애 인 회 망 복 지 과	2	176	81	94	
보 건 행 정 과	3	4,981	4,381	298	
건 강 증 진 과	2	1,000	216	784	
치 매 안 심 센 터	1	71	21	50	

[세 부]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사유	비고	
주요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86건)			49,200	22,342	26,227			
기 획 실	지방행정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73	38	20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		
	집중관리예산 운영	연구용역비	80	0	72	연내 용역 완료 불가		
문화체육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설 비	1,783	240	1,543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인한 사업기한 미도래, 2022년 사업완료 예정		
경 제 과	양동경열로시장고객휴게실 신축	시 설 비	377	362	3	추가사업추진(고객휴게실 안전관리를 위한 전동셔터 설치 등)		
	양동경열로시장CCTV설치공사(전환사업)	시 설 비	27	21	5	집행잔액 활용CCTV 추가 설치		
	용배수로정비	시 설 비		624	235	389	공사기간 부족, 설계 변경에 따른 공종 추가 및 변경 관급자재 반영	
				499	211	288		
			시설부대비	1	0	1		
			시설부대비	1	0	1		
	서창동농로개설	시 설 비	217	94	123	공사기간 부족, 설계변경에 따른 공종 추가 및 변경 관급자재 반영		
	농업기반시설물(농로·용배수로) 유지관리	시 설 비	70	63	7	공사기간 부족, 설계변경 및 민원반영에 따른 공종 추가 및 변경 관급자재 반영		
	덕흥동일원 농로정비	시 설 비	20	0	20	공사기간 부족, 설계용역 및 민원반영에 따른 공종 추가 및 변경 관급자재 반영		
	호우피해응급 복구비	공공운영비	40	35	5	재해긴급복구사업(추가발생분)		
	학교급식지원 센터설치운영	시 설 비		1,799	336	1,462	준공기한 미도래 (설계변경 등 공사기간 부족)	
			감 리 비	35	0	35		
			시설부대비	8	0	8		
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 도서관운영	시 설 비	44	12	24	준공 후 검수 및 지급기간 소요		
청소행정과	가정청소생활 폐기물수집운반 시설장비지원	자산및물품 취 득 비	256	0	256	코로나19로 차량공장 생산 지연에 따른 연내 납품 불가		
	자원순환형도시환경구현정책추진	연구용역비	22	0	22	연내 용역 완료 불가 (용역완료예정일2021.1.11.)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86건)			49,200	22,342	26,227		
공원녹지과	'7.28.~8.11.호우 피해항구복구비	시 설 비	83	17	31	준공기한 미도래	
		시 설 비	83	17	23		
		감 리 비	12	0	12		
	숲길조성관리	시 설 비	200	23	177	동절기 수목활착률 제고 및 견실시공을 위해 일시중지	
	주민생활개선사업	시 설 비	234	211	12	서구둘레길 기본 및 실시설 계용역 연내 완료불가	
	광주천도시정원 조성사업	시 설 비	50	0	50	준공기한 미도래	
	공원내각종시설 및수목관리지원	시 설 비	141	96	40	준공기한 미도래	
	윤리아린이공원 명품공원조성사업	시 설 비	499	147	352	준공기한 미도래	
	어린이공원편의 시설설치등	시 설 비	30	9	15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	
	도시공원안내시 설개선사업 (서구관내공원)	시 설 비	100	0	96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공원쉼터 정비사업	시 설 비	100	21	29	납품기한 미도래	
	윤천호수음악 분수운영	시 설 비	45	19	26	준공기한 미도래	
기후환경과	기후변화및폭염 대응쿨링포그설치	시 설 비	500	18	482	동절기로 쿨링포그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비점오염저감사업	국 내 여 비	2	0	2	설계용역은 완료하였으나 환 경부 승인절차로 내년 준공 예정	
시 설 비		89	46	43			
교통지도과	우리마을공영주 차장조성	시 설 비	1,635	1,565	69	용역 연내 준공불가	
	치평동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조성	시 설 비	2,800	80	2,720	국민권익위 의결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내 사업준공 불가	
	치평동느티나무 어린이공원공영 주차장조성	시 설 비	3,315	0	3,315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연내 준공불가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조성	시 설 비	5,561	20	5,541	부지매입 추진중이며 2021년 주차장조성사업 추진	
	상무2동 가변 (홀짝)주차제 LED 주차차 표지판설치사업	시 설 비	37	30	7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일시 중지	
가변주차제활성 화지원사업	시 설 비	101	98	3	동절기 공사 완공시기를 고려 필요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86건)			49,200	22,342	26,227		
	시내버스무장애 정류장설치	시 설 비	40	33	7	관급자재 구입비 미청구	
여성아동 복지과	어린이집지원 업무추진	시 설 비	15	0	13	완공예정일 21년 1월말로 연내착공 어려움	
	국공립유덕어린이 집신축이전	시 설 비	10	0	8	완공예정일 21년 1월말로 연내착공 어려움	
	육아종합지원 센터설치	자산및물품 취 득 비	250	10	238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공사 후 장난감 등 기자재 구입, 입 찰기간 및 조달 배송, 설치 기간소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5,792	5,592	200	카드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정산 지연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비	20	10	10	연내 용역 완료 불가	
	취약계층아동통합 서비스지원	자산및물품 취 득 비	6	2	4	나라장터 업체계약 검수조서 요청 지연	
	취약계층아동통 합서비스지원(국)	자산및물품 취 득 비	2	1	1	나라장터 업체계약지연	
안전총괄과	유관기관업무지 원및협조	자율방법대 실 비 지원	37	25	12	예산을 코로나19로 취소됨에 2차 추경으로 자율방법대 하 절기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상무1동원룸촌 환경정비사업	시 설 비	594	562	32	준공일 미도래	
		감 리 비	5	4	1		
		시설부대비	1	0	1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시 설 비	100	82	18	준공일 미도래	
	GIS기반통합방 재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550	303	247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자산및물품 취 득 비		200	0	200			
호우피해응급 복구비	사무관리비	22	20	2	2. 5. 지출완료		
도시재생과	소규모재생사업 (농성1동공동체마을 정원활약과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8	1	7	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 지원비 연장 필요	
		행사운영비	3	0	3		
		행 사 실 비 지 원 금	5	0	5		
		시 설 비	344	216	128		
		시설부대비	1	0	1		
소규모재생사업 (웃음꽃피는화정)	사무관리비	33	9	24	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 지원비 연장 필요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86건)			49,200	22,342	26,227				
		공공운영비	2	0	2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 공사 연장			
		행사운영비	210	144	66				
		행사실비 지원금	3	0	3				
		시설비	110	98	12				
		자산및물품 취득비	20	7	13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선(양동 새뜰)사업	공공운영비	8	6	2				
		행사운영비	54	45	9				
		시설비	1,308	1,017	291				
	지역공동체혁신 거점공간조성 (마을공방육성)	시설비	187	82	105			마을공방 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지역공동체혁신 거점공간운영 (마을공방육성)	사무관리비	15	0	15			마을공방 조성 준공 미도래 에 따른 공방운영비 2021년 까지 사업기간 연장	
		공공운영비	5	0	5				
		행사운영비	90	0	90				
		자산및물품 취득비	90	0	90				
건 설 과	공공편의시설 관리지원	시설비	470	277	193	자체설계 및 공사시행 기간 소요			
	양동채소전주변 도로개설	시설비	229	32	198	2021. 상반기 준공예정			
	쌍촌동엘리체주 변도로개설	시설비	200	127	73	완공예정('21.01.03)			
	도로및교량유지 관리	재료비	75	69	5	도로유지관리비용 상시 추진			
	안전사고예방설 해대책	재료비	50	22	28	설해기간 상시 사업 추진			
	교통약자이동편 익증진보도정비	시설비	48	0	48	겨울철 강도저하 우려			
	자전거도로정비	시설비	236	109	127	2021.1.28. 준공예정			
		시설비	423	418	5	2021.1.28.준공기한 미도래 2.10. 지출예정			
	광천지하보도편 의시설확충	시설비	550	355	195	준공금 지급 지연			
	보도정비	시설비	248	70	178	겨울철 강도저하 우려로 사업 중지			
	쌍촌동신천힐탑 아파트주변보도 정비	시설비	80	0	80	동절기 한파로 인한 구조물 강도저하 및 향후 하자발생 우려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무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86건)			49,200	22,342	26,227		
	금호동베스트빌주변안전환스설치	시 설 비	20	0	20	겨울철 강도저하 우려	
	서석고주변하수관로신설공사	시 설 비	1,000	69	931	실시설계용역 중 주민들의 요구 수렴 및 검토 기간 소요	
	서창천 주변오점 정비 및 수질개선공사	시 설 비	400	343	56	'20.12.18. 준공 '21. 1월 지출	
건축주택과	공가정비사업	시 설 비	61	0	61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이월	
	공동주택관리지원	시 설 비	266	167	99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기지연 등 연내 추진 불가	
	공동주택비정규직근무환경개선사업	민 간 자 본 사업 보 조	51	37	13	아파트 계약지연 등으로 연내 추진 불가	
주민자치과	주민등록및인감관리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11	109	1	조달구매지연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설 비	15	3	12	주민자치센터 옥상화단조성 시설비 사고이월	
	주민주도형마을 만들기사업추진	사 무 관 리 비	28	14	12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인터뷰 및 사진 편집 지체	
	마을만들기중간 지원센터운영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0	9	1	조달구매지연에 따른 이월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	0	1	조달구매지연에 따른 이월	
	사회적가치혁신 지원센터건립 (사회혁신기반조성 및지원)	시 설 비	9	0	9	BF 인증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용역 완료 불가	
		시 설 비	985	887	23	BF 인증 심사결과 반영 필요	
회계정보과	구청사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91	1,032	18	유도등 및 소화기 교체 공사 등 (연내 완공 불가)	
		시 설 비	316	259	57	상황실 현수막 전광판 제작 납품(납품기한 2021.01.12.)	
	동청사유지보수	시 설 비	371	338	30	연내 완공 불가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	
	금호1동 주민센터증축	시 설 비	500	34	466	연내 완공 불가	
	양3동주민센터 감성벤치설치	시 설 비	50	0	50	연내 완공 불가	
금호1동행정복지센터주차장포장면덧씌우기	시 설 비	20	0	20	연내 완공 불가 (금호1동주민센터증축)		
고령사회정 책 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신축)	시 설 비	3,327	528	2,799	사업부지 매입, 행정절차 이행, 주민간담회 등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과목			예산현액 ㉑	지출액 ㉒	이월액 ㉓	이월사유	비고
주요부서	세부사업	비목					
합 계(86건)			49,200	22,342	26,227		
장애인희망 복지과	서구장애인복지 관수전설이전	시 설 비	126	79	47	연내 완공 불가	
	서구장애인복지 관기능보강	시 설 비	50	3	47	연내 완공 불가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및구료비	4,603	4,291	10	국가예방접종 중 고위험군 A 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의 기간 이 21년 상반기까지 연장되 어 연내 사업완료 불가	
	취약계층인플루 엔자예방접종한 시지원	의료및구료비	260	19	240	정부 4차 추경으로 한시적으 로 확대된 사업으로 사업기 간이 2021. 4. 30. 까지임	
	코로나19대책 급의료지원단지 원및긴급대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 수	119	71	48	선별진료소 시 긴급의료지원 인력 지속 운영	
건강증진과	제2건강체력 센터건립	시 설 비	660	206	454	연내 완공 불가	
		감 리 비	36	9	26		
		시설부대비	4	0	4		
	제2서구건강 체력센터신축 (특별조정교부금)	시 설 비	300	0	300	연내 완공 불가	
치매안심 센터	치매안심센터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시 설 비	20	0	20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보강 추가 실시	
		자산및물품 취 득 비	51	21	30	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 한 교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검사의견 11> 사고이월 사업 최소화

2020회계연도 중 사고이월은 총 86건에 262억 2,700만원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단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1개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것.

사. 채무부담행위

참고자료

[법적근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함.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재난복구 긴급채무부담행위(지방재정법 제44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음.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함.

※ 2020년 채무부담행위 : 운용실적 없음

아. 예비비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긴급성)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보충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참고] 예비비의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승인은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름.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그 지출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만약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지출행위가 무효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 황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결정액 ㉑	지출액 ㉒	지출잔액 ㉓=㉑-㉒-㉔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합				510,638	451,134	59,504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민간인재해복구및활상동보금	120,000	98,400	21,600	문화체육과-21081(2020.9.25)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총교단체 지원
안전총괄과	안전한생활환경조성	사회재난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841	34,841		안전총괄과-2498(2020.2.25)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대응 유스퀘어 내 열감지기 심야 상황근무 인력채용 예산 지원
안전총괄과	안전한생활환경조성	사회재난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741	54,741		안전총괄과-4983(2020.4.20)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대응 유스퀘어 내 열감지기 인력운영비(추가) 예비비 지원
안전총괄과	안전한생활환경조성	사회재난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1,046	59,103	31,943	안전총괄과-8795(2020.7.15)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차단 유스퀘어 내 열감지기 인력운영비(추가) 예비비 지원
안전총괄과	안전한생활환경조성	사회재난예방관리	사무관리비	7,592	7,592		안전총괄과-1756(2020.2.10)호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대응 예산 지원
안전총괄과	안전한생활환경조성	사회재난예방관리	사무관리비	8,120	8,120		안전총괄과-8795(2020.7.15)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차단 유스퀘어 내 열감지기 인력운영비(추가) 예비비 지원
안전총괄과	안전한생활환경조성	사회재난예방관리	민간인재해복구및활상동보금	33,408	28,054	5,354	안전총괄과-1756(2020.2.10)호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대응 예산 지원
안전총괄과	재난대응역량강화	재해복구및지원	민간인재해복구및활상동보금	24,011	24,011		안전총괄과-11695(2020.9.11)호와 관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원
주민자치과	주민생안	안전한	재료비	14,310	14,309	1	주민자치과-3694(2020.3.

과		목		지출결정액 ㉑	지출액 ㉒	지출잔액 ㉓=㉑-㉒-㉔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단위	세부	통 계 목				
	현장행정 강화	생활환경 관리					10.)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대응 면마스크 제작배부
주민자치과	주민생활 행정강화	안전한 생활관리	자산및 취득비	9,990	9,391	599	주민자치과-3694(2020.3. 10.)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대응 면 마스크 제작배부
행정지원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사 기진작	안전한 생활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51,948	51,948		행정지원과-4261(2020.02 .27.)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대응 청사 출입구 체온 측정 인력채용 등
행정지원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사 기진작	안전한 생활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40,631	40,629	2	행정지원과-8952(2020.5. 19.)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대응 청사 출입구 체온 측정 소요예산 지원요청(2차)
행정지원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사 기진작	안전한 생활관리	사무관 리비	10,000	10,000		행정지원과-4261(2020.02 .27.)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대응 청사 출입구 체온 측정 인력채용 등
행정지원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사 기진작	안전한 생활관리	사무관 리비	10,000	9,995	5	행정지원과-8952(2020.5. 19.)호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대응 청사 출입구 체온 측정 소요예산 지원요청(2차)

〈검사의견 12〉 예비비 사용 적정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긴급성) 또는 당초편성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추가 지출(보충성)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 광주광역시 서구는 2020회계연도 중 예비비 총 8건에 510,638천원이 집행되었음. 사용이유는 대부분 코로나19 대책 경비로 적정하게 집행함

자. 성과보고서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임(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시·도, 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2.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2천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지방보조사업(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2020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실국명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계	12	92	201	121	50	60
의회사무국	1	1	2	0	2	0
기획실	1	1	4	3	1	75
홍보실	1	1	3	3	0	100
감사담당관	1	1	3	1	2	33
문화경제국	1	13	28	20	8	71
환경교통국	1	13	25	19	6	76
복지교육국	1	11	19	16	3	84
안전도시국	1	10	21	10	11	47
자치행정국	1	8	26	18	8	69
통합돌봄추진단	1	7	11	11	0	100
보건소	1	8	23	16	7	69
동주민센터	1	18	36	4	2	11

<검사의견 13> 성과관리(성과계획) 대상사업 조정

2020회계연도 검사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총 지표 201건 중 초과 달성 121건, 미달성 50건 등 약 6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특히 안전도시국 11건, 문화경제국 8건, 자치행정국 8건 등 그 달성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국가) 성과관리제도는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예산운용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관리[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제6호)]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중심으로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미국) 미국은 성과관리의 대상을 행정부, 정부기업 및 독립시설로 한정하고, CIA, 감사원, 우편국 및 우편규제위원회, 입법부 및 사법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거> Part 6 of OMB Circular No. A-11(2021) : Part 6(Performance Management) of this Circular, agency includes executive departments, government corporations,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s but does not include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nd the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Judiciary are not subject to these requirements. In cases where sections of Part 6 guidance are applicable only to a subset of executive departments, government corporations, and independent establishments, the section will specify to which subset of agencies the guidance applies.

나아가 사업관리(Program and Project Management) 적용기관을 24개 연방기관(기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근거> Part 6 of OMB Circular No. A-11(2021) 270조 (1) 17개 부처 ; 농업부, 상무, 국방, 교육, 자원, 건강 및 휴먼서비스, 국토안전, 주택·전원, 내무, 법무, 노동, 국무, 교통, 재무, 보건, 환경보호, 항공우주. (2) 7개 기관 ; AID(국제개발청), 일반행정청, 국가과학재단, 국가과학재단, 핵규제위원회, 인력관리청, 중소기업청, 사회보장(공적연금)청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는 성과관리 제도의 중심내용으로써, 그 취지에 따라 성과보고서 상의 분석결과 및 개선사항 등이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성과계획을 단위사업별로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제도, 규제 등 정책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및 업무를 계획대상”에 포함하는데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보임. 예컨대 의회사무, 감사활동, 사회복지 등 성격상 계량적 측정이 곤란한 업무까지도 획일적으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중심으로 운용」하려는 성과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측정이 곤란한 사업은 성과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예산사업만을 중점적인 성과계획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의 조정이 필요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무 중앙부처에 성과계획 대상의 조정 등 작성지침의 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미국의 성과관리 대상」 참조

차. 성인지 결산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성인지 예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3조, 예산에 있어서의 성평등).

성인지결산의 개요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총계	82	82	76	43,456	49,393	57,086	38,726	47,008	55,275	89.11%	95.17%	96.83%
일반회계	79	80	73	43,029	49,126	56,769	38,417	46,877	55,024	89.28%	95.42%	96.93%
기타특별회계	1	0	0	131	0	0	117	0	0	89.31%	0%	0%
기금	2	2	3	296	267	317	192	131	251	64.68%	49.22%	79.25%

성인지결산의 분야별 규모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총계	82	82	76	43,456	49,393	57,086	38,726	47,008	55,275	89.11%	95.17%	96.83%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0	18	18	17,989	22,578	27,367	17,371	22,117	27,113	96.56%	97.95%	99.07%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61	64	56	25,326	26,814	29,695	21,260	24,892	28,148	83.95%	95.83%	94.79%
자치단체 특화사업	1	0	2	141	0	24	95	0	15	67.24%	0%	61.33%

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참고자료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020회계연도 성립 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합 계				특교 4,200 국비 95,822 시비 453 기금 52 균특 2,455 특조 2,962	특교 4,200 국비 122,977 시비 364 기금 51 균특 6,059 특조 3,049	특교 1,457 국비 121,498 시비 323 기금 51 균특 4,704 특조 2,601	특교 2,743 국비 1,479 시비 41 기금 1 균특 1,355 특조 448	
기획실 (3건)	지방행정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	광역 보조금	5	0	0	0	
	지방행정 역량강화	포상금	광역 보조금	27	14	14	0	
	지방행정 역량강화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0.8	3	3	0	
도서관과 (10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어린이생태 학습도서관)	도서 구입비	광역 보조금	23	23	23	0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상록도서관)	도서 구입비	광역 보조금	23	23	23	0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11	11	11	0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15	15	15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다문화도서 자료확충)	도서 구입비	광역 보조금	18	18	18	0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독서동아리 홍보및지원)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11	11	11	0	
	광주바이오 블리츠 (생물다양성 탐사캡프)	행사 운영비	광역 보조금	25	0	0	0	
	공공도서관등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7	7	4	3	
		행사 운영비	광역 보조금	3	3	3	0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서구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광역 보조금	23	23	23	0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사업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150	150	112	38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14	14	14	0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0.4	0.4	0.4	0	
청소 행정과 (1건)	재활용 활성화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97	49	49	0	
공원 녹지과 (9건)	상무지구 공공공지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9	1	
	상무4-1근린 공원생활환경 숲조성사업	시설비	광역 보조금	400	400	329	71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긋는풍금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광역 보조금	200	200	0	200	
	상무시민공원 등공원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50	0	
	내방어린이 공원정비	시설비	특별 교부세	500	500	14	486	
	화정근린공원 외공원등 LED교체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20	20	19	1	
	화강3동도시 공원노후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100	100	93	7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노후어린이 공원장수,햇님 풍금)정비	시설비	특별 교부세	900	900	338	562	
	윤천호수음악 분수정비	시설비	광역 보조금	200	200	188	12	
기후 환경과 (10건)	자전거안전 교육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13	13	13	0	
	공유자전거 정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15	15	14	1	
	자전거보관대 정비및설치	시설비	광역 보조금	5.5	5.5	5.5	0	
	강변주차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33	33	33	0	
	Together 희망자전거	재료비	광역 보조금	6	6	6	0	
	가정용자전거 보일러설치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재원)	국고 보조금	21	308	308	0	
			광역 보조금	13	205	205	0	
	도로재미산 먼지제거	자산및 물품취득비	국고 보조금	300	300	296	4	
			광역 보조금	300	300	296	4	
	미세먼지 알리미 및 기상전광판 설치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9	1	
기후변화및 폭염대응 쿨링포그설치	시설비	특별 교부세	500	500	18	482		
폭염대비생활 공간조성 쿨링포그설치	시설비	광역 보조금	190	190	154	36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10	10	9	1	
교통 행정과 (1건)	마을버스무료 환승손실금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광역 보조금	237	404	404	0	
복지 급여과 (4건)	가계긴급 생계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광역 보조금	19,030	20,045	19,880	165	
	가계긴급 생계비업무 추진	사무 관리비	특별조정 교부금	88	83	72	11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금	27	509.5	509.5	0	
광역 보조금			18	339	339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저소득층한시 생활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금	7,073	7,929	7,929	0	
여성아동 복지과 (9건)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재원)	국고 보조금	60	60	0	60	
			광역 보조금	42	42	0	42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시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38	38	38	0	
	장애전담 시설차량 인건비지원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광역 보조금	12	24	22	2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광역 보조금	444	884	788	96	
	어린이집 소독비용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19	19	19	0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국고 보조금	27	34	30	4	
			광역 보조금	14	17	15	2	
	아동시설 방역물품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국고 보조금	23	31	31	0	
			광역 보조금	23	31	31	0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국고 보조금	5,792	5,792	5,592	200	
취약계층 아동방역 물품지원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0.08	0.08	0.08	0		
		광역 보조금	0.08	0.08	0.08	0		
교육 지원과 (1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국고 보조금	12	12	10	2	
안전 총괄과 (8건)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사업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9	9	9	0	
			의료및 구료비	7	7	7	0	
	상무1동 원룸촌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특별 교부세	594	594	562	32	
			특별 교부세	5	5	4	1	
			특별 교부세	1	1	0	1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대응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240	240	240	0	
재료비			10	10	10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40	40	40	0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대응 (특별조정 교부금)	사무 관리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50	0	
		안전체험센터 보수·보강 사업	시설비	광역 보조금	100	100	100	0	
		지역자율 방재단활동 지원	기타 보상금	광역 보조금	1	2	2	0	
		한파저감 시설설치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16	16	16	0	
		재난예경보 시설구축	시설비	광역 보조금	40	40	38	2	
도시 재생과 (2건)	주거지원형 (벚꽃향기 가득한농성 공동체마을)	시설비	군특 보조금	680	2,632	2,302	330		
	양동발산 마을뽕다리 (인도교)개설 사업	시설비	특별 교부세	700	700	54	646		
건설과 (26건)	지방하천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광역 보조금	25	25	25	0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3	3	3	0		
		공공 운영비	광역 보조금	4	4	4	0		
	국가하천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31	31	31	0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8	8	8	0		
		공공 운영비	국고 보조금	2	7	6	1		
	가로등유지	공공 운영비	광역 보조금	355	355	355	0		
		재료비	광역 보조금	30	30	30	0		
		시설비	광역 보조금	80	80	80	0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60	60	60	0		
	노후가로등 정비(절연블랑)	시설비	광역 보조금	210	210	210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주태기보안등 LED교체	시설비	광역 보조금	210	210	210	0	
	화정동일원 노후보안등 교체	시설비	특별 교부세	499.5	499.5	449.6	49.9	
		시설 부대비	특별 교부세	0.5	0.5	0.3	0.2	
	농성동KT&G 주변도로개설	시설비	광역 보조금	300	300	295	5	
	쌍촌동엘리체 주변도로개설	시설비	광역 보조금	200	200	127	73	
	금호동중원 팰리스별주변 도로개설	시설비	광역 보조금	250	250	14	236	
	양동광제사 주변도로개설	시설비	광역 보조금	270	270	203	67	
	미륵동항림사 주변도로개설	시설비	광역 보조금	200	200	14	186	
	국가허천유지 관리(자전거 도로)	시설비	국고 보조금	44	47	35	12	
	제설장비및 자재확충	재료비	광역 보조금	3	38	38	0	
	농성동건강 관리협화주변 보도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40	40	34	6	
	차량진입방지 시설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100	200	183	17	
	화정3동현대 아파트주변 보도정비공사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150	150	150	0	
	화정4동태영 아파트주변 보도정비공사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150	150	131	19	
	쌍촌동현대 아파트주변 보도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100	100	92	8	
	덕흥동부채 도로넛싸우기 공사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30	30	27	3	
	쌍촌동계수 마을보도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5	5	
	화정동한양 아파트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5	5	
	화정4동머자 골목도로포장	시설비	광역 보조금	200	200	176	24	
	화정3동주민 센터주변도로	시설비	광역 보조금	200	200	192	8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정비							
	서구용두동 자연마을도로 확·포장	시설비	광역 보조금	400	400	288	112	
	간성관리협회 ~광주은행간 도로정비	시설비	광역 보조금	150	150	135	15	
	유덕동유덕 교회주변의 1개소도로 정비	시설비	광역 보조금	100	100	99	1	
건축 주택과 (1건)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 시설개보수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재원)	광역 보조금	111	111	107	4	
행정 지원과 (2건)	5.18민주화 운동기념사업	행사 운영비	특별조정 교부금	80	39	39	0	
	5.18제40주년 기념사업	행사 운영비	국고 보조금	18	18	18	0	
		행사실비 지원금	국고 보조금	12	12	11	1	
회계 정보과 (5건)	행정정보 고도화추진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48	24	24	0	
	농성동주민 센터주차장등 기능보강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6	4	
	양성동주민 센터기능보강 및주민편의 시설설치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30	30	30	0	
	화정동주민 센터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20	20	19	1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145	145	141	4	
자산및 물품취득비		특별조정 교부금	35	35	28	7		
고령사회 정책과 (2건)	경로당기능 보강공사 (상무·금호 ·서창동)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9	1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금	19	25	25	0	
			광역 보조금	19	25	25	0	
장애 인 희망 복지과 (4건)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지원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0.3	1.4	1.4	0	
			광역 보조금	0.3	1.4	1.4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서구장애인 복지관수전실 이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130	126	79	47	
			국고 보조금	1,250	12,926	12,926	0	
	장애인활동 지원(바우처)	민간 위탁금	광역 보조금	2,534	5,540	5,540	0	
			국고 보조금	0.1	0.4	0.4	0	
	장애인거주 시설방역물품 지원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0.1	0.4	0.4	0	
국고 보조금			0.1	0.4	0.4	0		
보건 행정과 (2건)	코로나19 감염증진급 대책비	재료비	광역 보조금	60	60	60	0	
	보건소선별 진료소장비 지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국고 보조금	100	100	81	19	
상무금호 건강생활 지원센터 (1건)	맞춤형방문 건강관리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25	25	25	0	
문화 체육과 (4건)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	시설비	광역 보조금	45	45	43	2	
			국고 보조금	45	45	0	45	
	상무볼더링 인공암벽장 설치	시설비	광역 보조금	53	53	0	53	
			국고 보조금	100	100	97	3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주변 운동시설 개보수	시설비	국고 보조금	100	100	97	3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23	23	23	0		
경제과 (1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공공 운영비	광역 보조금	40	40	35	5	
일자리 정책과 (2건)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국고 보조금	1,126	2,939	2,939	0	
			광역 보조금	199	519	368	151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19	19	18	1	
			광역 보조금	3	3	0	3	
		재료비	국고 보조금	74	89	89	0	
			광역 보조금	14	19	11	8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6	16	16	0	
		행사 운영비	국고 보조금	3	2	2	0	
청소 행정과 (3건)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구현 정책추진	사무 관리비	특별조정 교부금	78	78	77	1	
		연구 용역비	특별조정 교부금	22	22	0	22	
		기타 보상금	특별조정 교부금	6	6	3	3	
		포상금	특별조정 교부금	24	24	15	9	
		자산및 물품취득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6	4	
	우리동네 청결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263	650	647	3	
			광역 보조금	84	84	72	12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18	52	52	0	
			광역 보조금	7	7	6	1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10	10	10	0	
공원 녹지과 (2건)	일반병해충 방제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31	36	36	0	
		재료비	국고 보조금	4	4	4	0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7	7	7	0	
기후 환경과 (3건)	가정용자누스 보일러설치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재원)	국고 보조금	240	308	308	0	
			광역 보조금	160	205	205	0	
	미세먼지불법 배출예방감시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1	41	35	6	
			광역 보조금	1	41	35	6	
		공공 운영비	국고 보조금	0.2	0.2	0.1	0.1	
			광역 보조금	0.2	0.2	0.1	0.1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3	3	3	0		
교통 행정과 (1건)	마을버스무료 환승손실금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광역 보조금	75	404	404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교통 지도과 (1건)	어린이보호 구역등안전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295	723	573	150	
			광역 보조금	41	80	64	16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13	13	6	7	
			광역 보조금	1	1	1	0	
복지 정책과 (2건)	종합사회 복지관기능 보강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재원)	광역 보조금	50	50	50	0	
	희망장터디 클래스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100	100	100	0	
복지 급여과 (2건)	가계긴급 생계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광역 보조금	2,500	20,045	19,880	165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금	800	7,929	7,929	0	
여성아동 복지과 (5건)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국고 보조금	4	11	11	0	
			광역 보조금	2	5	5	0	
	어린이집방역 물품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국고 보조금	27	27	27	0	
			광역 보조금	13	13	13	0	
	어린이집대체 교사지원사업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국고 보조금	8	59	5	54	
			광역 보조금	4	28	2	26	
	이동시설방역 물품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국고 보조금	8	31	31	0	
			광역 보조금	8	31	31	0	
	지역아동센터 꿈나눔지원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242	242	227	15	
			광역 보조금	27	27	25	2	
교육 지원과 (3건)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15	35	35	0	
	VR시민교육 지원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35	35	35	0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개발 맞선살향지원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5	5	0.2	4.8	
			연구 용역비	광역 보조금	15	15	14	1
안전 총괄과 (5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대응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광역 보조금	15	15	15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기타 보상금	광역 보조금	14	14	13	1	
	폭염대책 추진비등지원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37	37	35	2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21	21	20	1	
	살수차운영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20	20	18	2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22	22	20	2	
도시 계획과 (1건)	불법광고물 정비공공근로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350	350	343	7	
			광역 보조금	39	39	38	1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9	9	9	0	
			광역 보조금	1	1	1	0	
도시 재생과	우리동네 살리기 (문화와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	시설비	군특 보조금	210	430	3	427	
			광역 보조금	270	245	2	243	
		민간위탁 사업비	군특 보조금	150	150	0	150	
			광역 보조금	150	150	0	150	
		자산및 물품취득비	군특 보조금	70	70	0	70	
			광역 보조금	80	80	4	76	
건설과 (5건)	국가하천 유지관리 (광주천)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23	69	69	0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2	11	11	0	
		공공 운영비	국고 보조금	1	2	2	0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5	5	5	0	
	차량진입방지 시설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100	200	183	17	
	금호동벨트 교하주변도로 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20	20	19	1	
	양동행정 복지센터주변 도로포장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4	6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건축 주택과 (3건)	소규모공동 주택안전관리 지원	시설비	광역 보조금	28	28	21	7	
	노후중소형 아파트시설 개선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재원)	광역 보조금	113	113	50	63	
	공동주택비 정규직근무 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재원)	광역 보조금	26	26	5	21	
주민 자치과 (5건)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130	130	74	56	
			광역 보조금	22	22	13	9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49	46	23	23	
			광역 보조금	8	8	4	4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금	70,973	71,646	71,457	189	
			광역 보조금	11,342	11,450	11,404	46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 지원금운영 지원	사무 관리비	특별조정 교부금	152	76	75	1	
	주민자치회 사업운영지원 (보조)	행사 운영비	광역 보조금	1	1	1	0	
		행사실비 지원금	광역 보조금	1	1	1	0	
		민간 위탁금	광역 보조금	78	78	78	0	
		시설비	광역 보조금	4.5	4.5	4.5	0	
		자산및 물품취득비	광역 보조금	19.5	19.5	19.5	0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자산및 물품취득비	특별조정 교부금	20	20	19	1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재원)	광역 보조금	65	65	65	0	
행정 지원과 (1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진급 대책추진	사무 관리비	특별조정 교부금	3	3	3	0	
		자산및 물품취득비	특별조정 교부금	47	47	46	1	
고령사회 정책과 (4건)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금	6	25	25	0	
			광역 보조금	6	25	25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경로당혈압 측정기지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특별조정 교부금	90	90	87	3		
	노인건강검진	사회복지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7	7	0	7		
	노인사회활동 지원(순시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371	464	464	0		
장애인 희망 복지과 (4건)	지역지활센터 방역물품지원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1	1	1	0		
			광역 보조금	1	1	1	0		
	농아인쉼터 조성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광역 보조금	50	50	50	0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전재원)	광역 보조금	80	80	80	0	
	서구장애인 복지관기능 보강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3	47		
	장애인거주 시설방역물품 지원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0.3	0.3	0.3	0		
광역 보조금			0.3	0.3	0.3	0			
보건 행정과 (4건)	의료관련 감염병표본 감사체계운영 및예방관리 사업	사무 관리비	기금 보조금	0.2	0.2	0.2	0		
			민간 위탁금	7	7	7	0		
	보건소선별 진료소방기 지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국고 보조금	3	3	3	0		
	동네방네 생활방역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58	225	221	4	
				광역 보조금	64	64	25	39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2	2	0.2	1.8	
				광역 보조금	0.7	0.7	0	0.7	
		재료비		국고 보조금	51	51	49	2	
				광역 보조금	14	14	5	9	
	보건소환시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기금 보조금	45	45	44	1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건강 증진과 (1건)	주요통학로 금연환경조성	사무 관리비	광역 보조금	4.5	4.5	4.5	0		
보건 위생과 (1건)	노인복지시설 등공공급식 관리지원사업 운영	민간 위탁금	광역 보조금	50	50	50	0		
문화 체육과 (1건)	'7.28~8.11.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시설비	특별 교부세	295	295	0	295		
일자리 정책과 (1건)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369	369	296	73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3	3	0.7	2.3		
		재료비	국고 보조금	5	5	4	1		
공원 녹지과 (4건)	'7.28~8.11.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시설비	특별 교부세	83	83	17	66		
		감리비	특별 교부세	12	12	0	12		
	상무1동 녹지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4	6		
	생활권연접 위험수목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30	30	30	0		
	풍암호수공원 시설물정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4	6		
교통 행정과 (1건)	미올버스무료 환승손실금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광역 보조금	77	404	404	0		
복지 급여과 (3건)	간급복지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금	383	3,361	3,361	0		
			광역 보조금	48	420	420	0		
	위기가구 간급생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9.5	9.5	9.5	0	
			국고 보조금	2,193.5	2,193.5	1,707	486.5		
코로나19 위기가구간급 생계지원사업 홍보등운영비	사무 관리비	특별조정 교부금	35	35	34	1			
여성아동 복지과 (4건)	아이돌봄지원 서비스제공 기관중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 사업보조	광역 보조금	2	6	6	0		
			광역 보조금	5	5	5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이동복지업무 추진(가정위탁 아동등자립 정착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광역 보조금	20	95	85	10	
	이동양육한시 지원사업 (아동특별 돌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금	2,660	2,660	2,623	37	
안전 총괄과 (4건)	코로나19대책 긴급의료 지원단지원 및긴급대책비	사무 관리비	특별조정 교부금	30	30	30	0	
	자율방범대 초소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21	29	
	7.28~8.11. 집중호우재난 지원금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 보상금	국고 보조금	304	304	304	0	
	집중호우피해 소상공인지원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 보상금	광역 보조금	268	268	268	0	
도시 계획과 (1건)	광고물정비및 안전점검지원	시설비	광역 보조금	37	37	35	2	
도시 재생과 (1건)	주거지원형 (벚꽃향기 가득한농성 공동체마을)	시설비	균특 보조금	1,200	2,632	2,302	330	
건설과 (4건)	금호2동 노후가로등 밝기개선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8	2	
	제설장비및 자재확충	재료비	광역 보조금	35	38	38	0	
	쌍촌동신천 힐탑아파트 주변보도장비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80	80	0	80	
	7.28~8.11.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시설비	특별 교부세	110	110	0	110	
주민 자치과 (1건)	공동체 활동공간 기능보강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50	50	42	8	
회계 정보과 (1건)	상무2동행정 복지센터 석면해체및 천장재교체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26	26	26	0	

과 목			재원	성립전 예산 요청액	최종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주무부서	세부 사업	비목						
고령사회 정책과 (1건)	경로당 개보수공사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40	40	37	3	
장애인 희망 복지과 (1건)	상무시민공원 장애인전동 보장구충전기 설치사업	시설비	특별조정 교부금	1.5	1.5	1.5	0	
		자산및 물품취득비	특별조정 교부금	13.5.	13.5	12.2	1.3	
보건 행정과 (1건)	코로나19 대책긴급의료 지원단지원및 긴급대책비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특별조정 교부금	119	119	71	48	
		재료비	특별조정 교부금	20	20	20	0	
상무금호 건강생활 지원센터 (1건)	ICT활용 어르신건강 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국고 보조금	23	21	20	1	
		사무 관리비	국고 보조금	173	99	58	41	
		공공 운영비	국고 보조금	3	3	0	3	
		기타 보상금	국고 보조금	1.5	1.5	0	1.5	
		의료및 구료비	국고 보조금	13	13	5	8	
		자산및 물품취득비	국고 보조금	21.5	21.5	18.9	2.6	

타. 결산 첨부자료 등에 대한 검사

(1) 채권 및 채무

(가) 채권

참고자료

(가) 채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임대차 채권, 용자채권 등을 말함.

1) 보증금채권

- 보증금채권은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른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청사건물 임차 보증금, 숙소전세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기타 선수금 등이 해당
- ※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보증금채권에서 제외[공유재산(용익물권)으로 별도 관리]
- 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용하다 계약기간 도래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2) 용자금채권

- 용자금채권은 자금을 용자해 준 후 만기 도래 시 용자원금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는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용자목적에 따라 주택사업용자금, 의료보호기금용자금, 학자금용자금 등이 해당
- 자치단체가 법인, 개인 기타 제3자에게 빌려주고 향후 받을 수 있는 채권

3) 미수금채권(재산매각 및 사용 등 관련채권)

-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과, 수년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채권
 - 미수금채권은 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매각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며 이에는 재산매각 대금, 분양미수금, 환지청산금 등이 해당
- ※ 보증금·용자금채권 등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증금·용자금채권 등에서 관리

4) 기타채권

-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불보상금,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소송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채권 등이 해당.
- ※ 적용제외 채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채권현황(원금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237	28	134	106	3,265
일 반 회 계		2,826	15	15	-	2,841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1	△73	3	76	8
기금	사회복지기금	331	85	115	30	416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채권현황	3,533	3,237	3,265

(나) 채무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채증권(해외채 포함),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의 증감내역 등을 파악하여 작성(지방재정법 제87조의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

- 1) 채무관리보고서의 범위
 - 채무관리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을 대상으로 작성
 - 그 밖의 금전지급 목적의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금 등), 금전지급 목적 이외의 부채(선수금, 선수수익 등), 세입세출외 보관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작성
- 2) 지방채무와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구분
 - 지방채무 = 지방채증권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채무에 포함된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제외한 금액
- 3) 시·도의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 채무에 포함
- 4) 조정액은 환율변동, 이자율 변동에 따른 조정액을 말함.
- 5) 당해연도 말 현재액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증감액 + 조정액
- 6) 소멸액 중에는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당해연도 4월 이후 상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재정법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함.
-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됨.
-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함.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봄.

지방재정법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부채)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부채)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부채)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채권(부채)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③ 삭제 <2014.5.28.>
-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부채)의 범위, 채권(부채)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부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1. 지방채증권
- 2. 차입금
- 3. 채무부담행위
- 4. 보증채무부담행위
- 5. 퇴직급여충당부채
- 6. 장기예수보증금
- 7. 장기선수수익
-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지방재정법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함.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채무 연도별 현황(기준연도별 현재액)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13,930	11,002	7,263	-	-
인구수	309,579	306,957	304,172	300,975	296,576
주민 1인당 채무(천원)	45	36	24	-	-

(2020.12.31.기준)

(2) 공유재산

참고자료

[법적근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용도별, 종류별로 작성(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제1항)

(가) 행정재산

- 1)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단,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용익물권 포함
- 2)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체육시설, 문화회관, 도로, 하천 등)
- 3)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단 기타특별회계는 제외
- 4) 보존용재산 :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유적, 역사적 건물 등)

(나)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다) 수 : 토지 필지수, 건물 동수, 입목죽 본수, 기계기구 수, 선박 척수, 항공기 대수, 무체재산 수, 유가증권 수, 용익물권 수

(라) 면적 : 토지의 실소유면적, 건물의 총 연면적, 용익물권의 면적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며, 용도는 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함

(나) 건물 : 「건축법」상 건물

- 1) 보일러, 승강기, 냉·난방설비, 조명기기, 창틀 등 건물과 일체가 되어 독립되지 않는 물건 포함
- 2) 담장, 우물, 주택과 단 채로 된 광(주물은 제외), 농장에서 여러 부속시설 등 건물의 종물 포함

(다) 입목죽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 명인방법에 의한 것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입목죽(가로수, 관상수, 조림 등)

(라) 공작물 : 땅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으로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시설물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구축물 (도로조성비, 도로부속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 (마) 기계기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계기구 및 기타 지방회계기준에 의한 기계장치
- 1)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기구
 - 2) '11.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계기구는 없음.
- (바) 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사) 유가증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함.
- (아)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전세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 회 원 권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한 권리(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관리계획의 내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 (가)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1)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2)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나)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1)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2)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인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가)사업목적 및 용도, (나)사업기간, (다)소요예산, (라)사업규모 (마)기준가격 명세, (바)계약방법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19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6,620	557,921	67,349	577,097	146	19,772	24	1,683	67,471	595,186
토지	3,019	347,158	3,064	358,818	62	12,190	22	1,629	3,104	369,379
건물	157	107,530	170	110,014	18	7,094	1	44	187	117,064
입목죽	61,503	28,092	62,003	28,095	0	0	0	0	62,003	28,095
공작물	1,858	72,990	2,002	77,989	65	479	1	10	2,066	78,458
기계기구	4	224	31	254	1	9	0	0	32	263
선박	0	0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4	409	34	409	0	0	0	0	34	409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24	965	24	965	0	0	0	0	24	965
회원권	21	553	21	553	0	0	0	0	21	553

(3) 물품

참고자료

[법적근거]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①현금, ②유가증권, ③공유재산(법 제4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2호).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 작성대상 물품
 - 1) 31개 정수물품(당초 32개 정수물품이나 조달청에서 소형컴퓨터와 중형컴퓨터를 통합 조정).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7887('10.12.13)호] 참조
 - 2) ① 연번은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의 정수연번
 - 3) ⑤ 정수는 정수 승인된 물품수량
 - 4) ② 정수물품분류번호~ ⑥ 내용연수, ⑨ 물품증감실적, ⑫ 당해연도말 보유액의 작성기준일은 연도 말 현재
 - 5) ⑧ 전년도말 현재액은 연도말 현재-당해연도말 보유액을 기준으로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물품증감현황을 정리.

2020회계연도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8년도 현재액	'19년도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년도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760	632	106	109	629
금 액	6,631	6,428	1,348	1,036	6,740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공유재산	557,921	577,097	595,186
물 품	6,631	6,428	6,740

파. 금고

참고자료

[법적근거] 금고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은행법」에 따라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거래은행을 말함(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회계법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음.

2. 특별회계

참고자료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가. 목적세

- 특별회계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나. 5년, 일몰제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다. 이미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

-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거나 존속기한이 2018.12.31.을 지난 기한으로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12.31.을 그 존속기한으로 함.

가. 세입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6,497	46,361	37,329	75	8,957
기타특별회계	36,497	46,361	37,329	75	8,957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734	1,745	1,745	0	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4,763	44,616	35,584	75	8,957

참고자료

미수납액 사유 및 처리방법

미수납액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 '무재산'으로 분류하고 개인거주상태와 법인폐업내용을 조회하여 '행방불명', '국외이주' 그리고 '폐업또는부도'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체납자가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금압박'으로 인한 미수납액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에 대한 무지 등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 납세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납세태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나. 세출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계	36,497	6,979	12,915	213	16,390
기타특별회계	36,497	6,979	12,915	213	16,3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34	1,545	-	189	-
주차장운영특별회계	34,763	5,434	12,915	24	16,390

3.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2020회계연도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 산	988,509	1,019,655	1,058,647	38,992	3.82
Ⅰ. 유 동 자 산	132,731	151,974	172,712	20,738	13.64
Ⅱ. 투 자 자 산	4,182	3,976	3,711	△265	△6.66
Ⅲ. 일 반 유 형 자 산	91,222	100,182	108,679	8,497	8.48
Ⅳ. 주 민 편 의 시 설	107,882	107,376	112,240	4,864	4.52
Ⅴ. 사 회 기 반 시 설	650,865	654,621	659,009	3,756	0.67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628	1,526	2,297	771	50.52
부 채	24,519	20,044	23,271	3,227	16.09
Ⅰ. 유 동 부 채	10,571	9,165	11,780	2,615	28.53
Ⅱ. 장 기 차 입 부 채	3,631	-	-	-	-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0,317	10,879	11,491	612	5.62
순 자 산	963,990	999,611	1,035,376	35,765	3.57
Ⅰ. 고 정 순 자 산	842,742	863,319	881,320	18,001	2.08
Ⅱ. 특 정 순 자 산	11,441	11,611	11,384	△227	△1.95
Ⅲ. 일 반 순 자 산	109,807	124,681	142,672	17,991	14.42

□ 현 황

유형자산(주차장) 자산명세서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기초잔액	증가액	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비	기타(처분 등)	
합계	30,164	2,385	416	0	32,133
일반회계	8,628	30	99	0	8,559
기타특별회계	21,536	2,355	317	0	23,574

나. 재정운영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78,483	81,025	79,372	△1,653	△2.04
가. 사업총원가	330,925	405,114	571,930	166,816	41.17
나. 사업수익	252,442	324,089	492,558	168,469	51.98
II. 관리운영비	80,828	74,642	85,898	11,256	15.07
III. 비배분비용	11,318	8,807	10,229	1,422	16.14
IV. 비배분수익	10,321	5,086	7,955	2,869	56.40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60,308	159,388	167,544	8,156	5.11
VI. 일반수익	189,822	194,179	197,321	3,142	1.61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29,514)	(34,792)	(29,777)	△5,015	14.41

<점사의견 14> 재무제표 작성업무의 전문화

지금의 예산제도는 그 결산에 있어 단식부기 방식에 의한 종래의 예산회계방식과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기업)회계방식을 병용하고 있음. 이는 장차 공공회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함.

따라서 서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재무회계 전담 직원 교육,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임.

4. 지방의회

가.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예산편성 및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구성비
	합계	1,520	1,379	141	100%
의원 관련	소계	1,200	1,083	117	100%
	의사운영지원	141	114	27	
	의정활동지원	789	737	52	
	의정활동홍보지원	208	180	28	
	기본경비(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제외)	62	52	10	
사무 직원 관련	소계	320	296	24	
	인력운영비(무기계약직 관련)	257	246	11	
	기본경비(직원 여비, 업무추진비)	63	50	13	

(1) 2020년도 의회 회기운영 현황

(가) 정례회

구분	일수	회기	내용	비고
합계 (2회)	39			
제285회 정례회	12	6.15(월)~6.26(금)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구정질문·답변 ·일반안건 처리	
제290회 정례회	27	11.25(수)~12.21(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처리 등	

(나) 임시회

구 분	일수	회 기	내 용	비고
합계 (10회)	52			
제281회 임시회	7	1.14(화)~1.20(월)	· 2020년도 구정 업무계획보고 · 일반안전 처리	
제282회 임시회	5	2.17(월)~2.21(금)	· 일반안전 처리 · 현장방문활동	
제283회 임시회	7	3.6(금)~3.12(목)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일반안전 처리	
제284회 임시회	7	5.20(수)~5.26(화)	· 일반안전 처리 · 현장방문활동	
제286회 임시회	2	7.2.(목)~7.3.(금)	· 하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 하반기 상임위원장단 선거	
제287회 임시회	8	7.14(화)~7.21(화)	·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 일반안전 처리	
제288회 임시회	8	9.14(월)~9.21(월)	· 일반안전 처리 · 현장방문활동	
제289회 임시회	8	10.19(월)~10.26(월)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구정질문·답변 · 일반안전 처리	

(2) 2020년도 의회 활동 현황

(가) 결산승인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심사결과 개선의견(5건)
 -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결손사유 및 미수납액 관리 철저
 - 판매용품(쓰레기봉투) 재고관리 철저
 - 명시이월액 최소화 필요
 - 물품증가 및 현재액의 정확한보고
 -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

(나) 행정사무감사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141건 지적
 - 감사기간 : 2020. 12. 2. ~ 12. 10. (9일간)

(다) 예산안 심의

○ 예산안 심의

구분	의결일	예산조정내역	비고
2021년도 예산안	2020. 12. 21.	31개 사업, 750백만원 삭감 4개 사업, 92백만원 증액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분	의결일	예산조정내역	비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04. 29.	5개 사업, 389백만원 삭감 2개 사업, 389백만원 증액	
2020년 제2회 추경	2020. 09. 22.	3개 사업, 1,031백만원 삭감 4개 사업, 1031백만원 증액	
2020년 제3회 추경	2020. 12. 01.	14개 사업, 1,043백만원 삭감 6개 사업, 315백만원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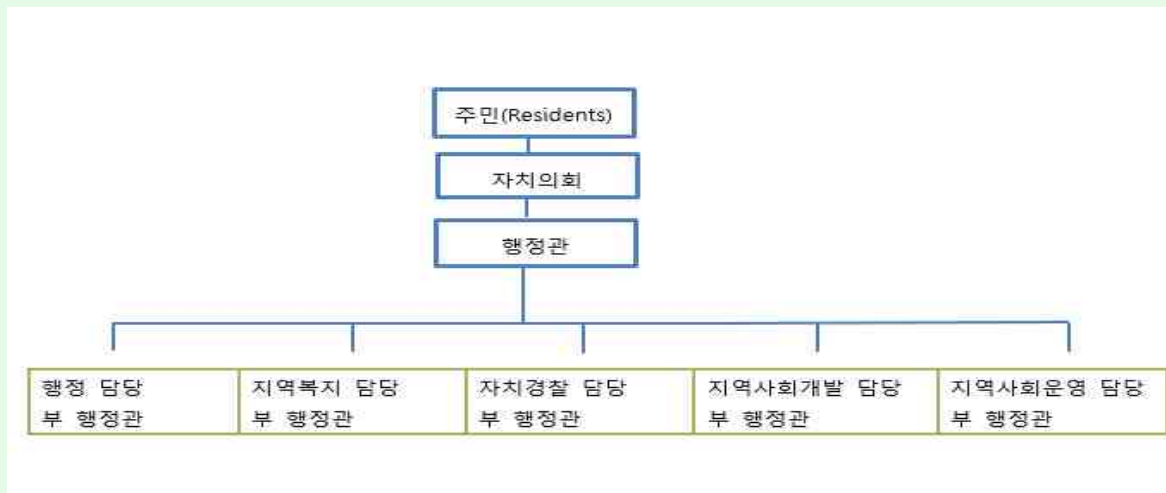
(라) 조례안 등 안전 심의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처 리 내 용					보류	비고
			가결		부결	보고 청취	철회		
			원안	수정					
총 계	142	141	134	2		5			
예산안/기금안	5	5		5					
결산안	1	1	1						
조례안	소 계	69	69	49	12	6		2	
	의원	35	35	25	7	1		2	
	위원회								
	구청장	34	34	24	5	5			
동의안/승인안	11	11	8	2	1				
결의안/건의안	4	4	4						
규칙안									
업무보고 의견제시	4	4	4						
공유재산	3	3	3						
기타 안전	10	10	10						

참고자료

미국 지방정부(헨라이코카운티) 조직도



[참고의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의 대표인 자치의회가 자치정책의 결정기구이고 그 결정에 따라 임명된 행정관이 집행하는 체제임.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의 조직인 의회사무조직이 집행부로 편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집행부에 편성·집행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집행부 중심의 지방자치 운영은, 지방자치의 전통과 현재 선진국의 운영 체제에 비추어 그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Ⅲ. 기금운용계획

참고자료

[법적근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정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담보하고, 예산보다 신속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하여 예산외로 운용 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

기금의 설치 제한(지방기금법 제3조)

(1) 기금신설에 관한 사전 협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지방기금법 제3조 제1항).

(2)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만 설치가능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3조 제3항).

(3)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이내' 원칙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함.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4조).

(4)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지방기금법 제4조 제4항).

(5) 기금을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경우(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

(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이 종료된 경우

(나)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라) 이외에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서구 기금 운용현황(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조성액				지출	당해연도말 현재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기타		
계	11,499	740	40	161	421	1,816	11,045
통합관리기금	1,220				8	8	1,220
사회복지기금	3,216			161	175	270	3,282
양성평등기금	205				4	0	209
재난관리기금	5,670	590			104	1,328	5,036
옥외광고발전기금	841	150			17	54	954
식품진흥금	347		40		113	156	344

참고자료

[법적근거]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기타수입 등

〈감사의견 15〉 결산서 내용 오류 최소화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는 그 양이 방대하여 내용상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서류의 작성 후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오류가 없는지 수차례(또는 여러명이) 검토하는 절차 등 결산서 작성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 결산서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결산서 작성 절차 및 방법을 재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프로세스 개선(예: 검토횟수 상향, 검토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추진하기를 권고함.

IV. 결산검사의견 목록

구분	계	결산검사의견 내용	비고
계	15		
검사의견		1. 예산총칙 이용대상 경비(목) 구체적으로 명시	P.12
		2. 사회복지분야 예산 부담 증가	P.14
		3. 세입예산 편성 시 수납추이 고려	P.15
		4. 세외수입 편성 시 수납추이 고려	P.19
		5. 지방세 감면 실적 양호	P.21
		6. 불용액 과다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필요	P.27
		7. 재량지출 비중 제고 촉구	P.29
		8. 예산 심의 시 지방보조금 사업 면밀 검토	P.36
		9.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	P.38
		10. 영미 등 지방자치 선진국 장기연수 적극 추진	P.40
		11. 사고이월 사업 최소화	P.70
		12. 예비비 사용 적정	P.73
		13. 성과관리(성과계획) 대상사업 조정	P.75
		14. 재무제표 작성업무의 전문화	P.102
		15. 결산서 내용 오류 최소화	P.108

결산검사 활동지원

서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 062-360-7879

서구청

자치행정국장 이해경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지출팀장 전지환

주무관 서영선

☎ 062-360-7473